

워킹페이퍼 W29 / 2006. 6

#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김 수 석	부연구위원
김 태 곤	연구위원
강 혜 정	전문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김 수 석	부연구위원	연구 총괄, 1~2장, 4~5장
김 태 곤	연구위원	2장, 4장
강 혜 정	전문연구원	3장, 5장

## 머 리 말

---

최근 정부는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 내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농가 유형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맞춤형 농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기존의 농업정책을 일정 정도 수정함으로써 농정의 기본 틀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체 농가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적합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농가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새로운 분류방법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분류방법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내외 유형분류 방식을 조사하였고, 검토한 내용을 기초로 삼아 대안적 분류방식과 지표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군집분석을 통해 농가에 대한 다면적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동안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위로하며, 이 연구 자료가 농가 유형화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후속연구로 이어지는데 활용되길 기대한다.

2006.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 요 약

---

“맞춤형 농정”이란 정부가 정책 수혜자(농업경영체)의 유형별로 정책 프로그램 메뉴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는 스스로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정책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농정 추진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농업경영체, 특히 농가의 유형 구분이다.

먼저 우리나라 농가들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4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농가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분석하고, 전체 농가를 몇 개의 유형으로 군집화하였다. 그 다음 농가 유형 구분을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 요인들이 각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농가 유형을 구분하는 지표와 그 지표를 이용하여 농가를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분석 방법으로 인자분석(factor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군집분석에 의한 농가 유형화 작업에서 농업소득, 경영주 연령, 영농 형태가 농가 유형을 구분 짓는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가 유형을 구분할 때 농업소득, 경영주 연령, 영농 형태는 주요 지표로, 나머지 변수들은 보조 지표로 활용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농가 유형 구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농가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 쌀전업농, ② 원예중소농, ③ 축산 전업농, ④ 고령복합농, ⑤ 고령영세농, ⑥ 부업농 등이다.

다음으로 농가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 국내외 제도 및 방식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농가 유형 분류는 아직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해 개념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책시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 현실에 부합하는 통일된 농가 유형 분류체계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농림부가 각각 다른 분류체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복지적 정책을 비농업 부문과 통일적으로 농업부문에서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농가를 분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과 농림부는 통일된 농가 유형 분류체계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현재 농업총조사에서는 전업농/겸업농 분류를 사용하고, 농업기본통계조사에서는 주업농/부업농/자급농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이원화된 분류체계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전업농/겸업농 분류보다 주업농/부업농/자급농 분류가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분류로 판단되기 때문에 농가 유형 분류를 주업농/부업농/자급농으로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농림부는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통계청의 분류와 별도로 정책적 육성 대상으로서의 전업농업인을 개념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 유형화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첫째, 전업농업인은 그러한 범주로 분류 내지 선정 자체가 이미 정책적 육성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유형별로 그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맞춤형 농정과는 그 목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전업농업인을 육성이 아닌 다른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관련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농정의 대상으로서 전업농업인은 그 용도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전업농업인을 품목별로 접근하기 때문에 구분의 기준이 너무 많고 또한 지표로서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외국의 농가 유형 구분방식으로 EU와 독일, 일본의 제도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독일은 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분류방식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유형방식이 거의 비슷한 편이다. 일본의 농가 유형 구분에서 독특한 것은 인정농업자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욕과 능력을 가지고 전문적인 농업경영을 지향하는 자가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그 계획을 심사하여 인정농업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 농업경영체와 구분되는 인정농업자 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EU에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는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품목별 전문화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구분에서 일종의 표준소득에 해당하는 품목별 표준수입(SGM, standard gross margin)과 경영체의 표준총수입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즉 먼저 농산물의 품목별 표준수입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경영체의 표준총수입을 산출한다. 영농규모에 따른 유형 구분은 경영체 표준총수입의 크기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영농규모를 나타내는 단위로 유럽규모단위(ESU, european size unit)가 설정되는데, 1 ESU는 1,200 유로의 표준총수입을 나타낸다. 생산품목의 전문성에 의한 유형화는 경영체의 표준총수입 중에서 특정 품목군의 표준수입이 차지하는 비중(2/3)으로 정해진다. 이러한 유형 구분의 목적은 농업경영체들의 계층별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즉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에서 농업경영체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유형화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형별 실태에 적합한 후속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를 활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농가 유형 구분의 방법으로 단일지표를 사용하는 영농규모에 의한 구분과 연령, 소득, 생산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유형별 특성에 의한 구분으로 대별하였고, 영농규모에 의한 구분은 다시 투입요소의 크기에 의한 구분과 산출성과의 크기에 의한 구분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유형분류에 적합한 새로운 지표 혹은 유형 구분을 제시하였다.

투입요소에 대한 지표로 기존의 경지규모 대신에 “환산영농규모지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지표는 경지 이외의 농업고정자본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얻은 값을 경지면적과 합쳐 농가의 영농규모로 파악하는 것이다. 환산영농규모지표는 품목 구분 없이 농가별 종합적인 영농규모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존의 경지규모에 의한 분류보다 더 현실에 부합하는 분류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축산을 포함하는 복합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산출성과에 대한 지표로는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지표는 농가들의 영농 성과를 표준소득 형태로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농가를 유형화하는 것이다. 즉 표준소득은 농가 조사나 농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농가들의 실제 농업소득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고 또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배작목과 재배면적, 축종과 사육두수 등을 조사하여 간접적으로 농업소득을 파악하는 것이다.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에 의한 농가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절차가 차례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단위당 품목별 표준소득을 산출한다. 둘째, 품목별 표준소득을 근거로 개별 경영체의 표준소득을 산출한다. 셋째, 일정 크기의 경영체 표준소득을 영농규모의 단위로 나타내고, 영농규모단위의 크기에 따라 농가를 계층적으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군집분석으로 도출된 6가지의 농가 유형을 농업소득과 연령, 생산품목을 고려한 종합적 특성의 농가 유형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맞춤형 농정의 추진대상으로 설정한다. 맞춤형 농정의 기본원리는 농가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메뉴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농가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상응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유형별로 공통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각 유형에 대해 개별 정책메뉴를 제시한다. 먼저 품목별 전문성을 보여 주는 쌀전업농, 원예중소농, 축산 전업농과 고령복합농에 대해서는 직불제 등 일반적인 농업정책을 적용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품목별 특성에 맞는 개별 지원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령복합농과 고령영세농에 대해서는 고령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영이양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메뉴를 제시한다. 특히 고령영세농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 농으로서 사회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은퇴할 수 있는 은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부업농은 원칙적으로 직불제 등 농업생산 및 소득정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그러나 농촌인구를 유지하는 농촌정책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메뉴를 제공한다.

ABSTRACT

---

## Classifying Farm Typology for Customized Agricultural Policies

This study aims to classify farm typology in Korea, which is a basis work for performing 'customized agricultural policies'. For references for farm typology, classifying farm typology in EU and Germany is investigated. For empirical analysis, multivariate techniques of factor and cluster analysis are applied to farm-level cross sectional data from 2004, allowing firstly, the identification of underlying constructs characterizing farms within the sample, and secondly, the categorizing of relatively homogeneous farms in terms of farm characteristics, production performance index, farming type(major crop produced) and farm operator's human capita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cluster analysis indicated the presence of six clusters. The classification of sample farms thus resulted in six distinctively different types. The six identified types can be characterized as: specialized rice farms, medium sized horticulture farms, specialized livestock farms, diversified farms with old operators, small income farms with old operators, and farms with off-farm income as a major income. These findings highlight important farm typology differences for consideration from agricultural policy formulation perspectives

Secondly, clustering is influenced mainly by agricultural income, operator age, and farming type. These variables can be used as major indices for classifying Korean farms. A simplified index for classifying farm typology will be required for actual application on population of farms. This study suggests two alternatives, these being "transformed farm size" and "standardized income".

Researchers: Soo-Suk Kim, Tae-Gon Kim, Hye-Jung Kang  
E-mail address: soosuk@krei.re.kr, taegon@krei.re.kr, kang@krei.re.kr



## 목 차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 2
3. 선행 연구 검토 ..... 3

### 제2장 맞춤형 농정의 추진배경과 기본틀

1. 맞춤형 농정의 추진배경 ..... 5
2. 맞춤형 농정의 필요성과 의의 ..... 9
3. 맞춤형 농정의 추진방향 ..... 11

### 제3장 유형화를 위한 농가구성 실태 분석

1. 농가구성 현황 ..... 19
2. 군집분석을 이용한 농가 유형 분석 ..... 25

### 제4장 국내외 농가 유형 구분방식 검토

1. 우리나라의 농가 유형 구분 방식 ..... 37
2. 외국의 농가 유형 구분 방식 ..... 44

### 제5장 농가 유형 구분의 지표 설정과 유형화

1. 영농규모에 의한 농가 유형 구분 ..... 60
2. 유형별 종합적 특성에 의한 농가 유형 구분 ..... 69

### 제6장 요약 및 결론 ..... 72

### 참고문헌 ..... 76

## 표 차 례

---

### 제2장

- 표 2- 1. 세계 농업과 농정의 흐름 ..... 6  
 표 2- 2. 벼농사 농가의 경영발전 단계별 정책 프로그램 예시 ..... 14

### 제3장

- 표 3- 1. 경지규모별 판매금액별 농가 분포 (2000년) ..... 23  
 표 3- 2. 영농 형태별 판매금액별 농가 분포 (2000년) ..... 24  
 표 3- 3. 경영주 연령별 판매금액별 농가 분포 (2000년) ..... 24  
 표 3- 4.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 (2000년) ..... 25  
 표 3- 5. 농가 특성 변수 ..... 26  
 표 3- 6. 기초 통계량 ..... 27  
 표 3- 7. 공통인자와 누적기여율 ..... 30  
 표 3- 8. 인자부하행렬 ..... 31  
 표 3- 9. 유형별 평균 인자득점 ..... 33  
 표 3-10. 유형별 일차변수의 평균값 ..... 35

### 제4장

- 표 4- 1. 품목별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 대상자 기준 현황 ..... 42  
 표 4- 2. ESU 크기에 따른 계층 구분 ..... 46  
 표 4- 3.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에 따른 독일의 유형 분류 ..... 49  
 표 4- 4. 독일과 EU의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방식 비교 ..... 53  
 표 4- 5. 일본의 농가 유형 구분 방식 ..... 54  
 표 4- 6. 일본의 농업생산법인 등록 현황 ..... 55  
 표 4- 7. 일본의 품목별 마을영농수 ..... 57  
 표 4- 8. 일본의 인정농업자 수 ..... 57

**제5장**

표 5- 1. 토지경작규모와 환산영농규모에 의한 영농계층 구분 비교 .....	63
표 5- 2. 환산영농규모에 의한 계층 간 농업조수입 및 경영비 .....	64
표 5- 3. 영농계층간 농업조수입 및 경영비의 변이계수 비교 .....	64

## 그림 차례

---

### 제2장

그림 2- 1. 농업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분담 체계 .....	12
그림 2- 2. 농업인력과 농업경영체 육성 체계 .....	13
그림 2- 3. 정책수단별 농가 유형 구분 모식도 .....	17

### 제3장

그림 3- 1. 경작규모별 농가의 분포 추이 .....	20
그림 3- 2. 연령별 농가인구 분포 추이 .....	21
그림 3- 3.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분포 추이 .....	22
그림 3- 4. 농가 유형화 단계 .....	30

### 제4장

그림 4- 1. 일본의 농가 유형별 호수 추이 .....	55
그림 4- 2. 인정농업자의 인정체계 .....	58

### 제5장

그림 5- 1. 군집분석에 의한 농가유형 분류 .....	70
---------------------------------	----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00년대에 들어서 세계농정은 가격지지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지불제 등의 정책을 확대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직접지불 등과 같은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 내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농가 유형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맞춤형 농정을 계획하고 있다.
- 맞춤형 농정은 그동안 추진된 농정이 개방에 대응하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품목 중심의 구조조정에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농가 단위의 구조조정에는 미흡한 효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기존의 농정들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 해당한다.
- 맞춤형 농정을 실시하기 위해 선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농가 유형 구분과 여기에 적용할 기본지표 설정
  - 품목 중심 직접지불제를 농가 단위 직불체계로 개편
  - 맞춤형 농정의 지원수단이 되는 농가등록제의 도입방안 마련 및 실시

- 이러한 과제 중에서도 맞춤형 농정의 추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농업경영체의 유형 구분이다.
  - 이는 맞춤형 농정의 핵심이 농업경영체의 유형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농업경영체의 유형 구분이 필수적이다.
  - 농업경영체 중에서는 수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문성과 규모에 있어 경영체들 간에 이질성이 큰 농가 쪽에 보다 큰 유형 구분의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다.
- 그런데 농가 유형 구분에 있어서는 유형 구분의 기준이나 유형의 수에 대해서는 농업 통계나 관계법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논란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농가 유형 구분만으로는 맞춤형 농정의 실시에 적합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여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농가 유형에 대한 분류방법을 재검토하여 현실을 반영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농가 유형 구분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 2.1. 연구내용

- 이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맞춤형 농정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을 고찰한다. 여기서는 새로운 농정 추진방식이 국내외의 농정변화 추세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 제3장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원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의 농가 구성 실태를 파악한다. 나아가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군집분석을 통해 농가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또한 이를 통해 유형화에 필요한 지표가 될 수 있

는 내용을 파악한다.

- 제4장에서는 농가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 기존의 국내외 제도를 살펴보고 이들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제도상의 한계점을 분석한다.
- 제5장에서는 농가 유형 분류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과 분류의 기준이 되는 지표를 제시한다.

## 2.2. 연구방법

- 현재의 농가 유형 구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0년 농업총조사와 2004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특히 2004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통해 농가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파악하고, 전체 농가를 몇 개의 유형으로 군집화하며 더 나아가 농가 유형 구분을 결정하는 요인 및 각 유형에 관련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농가 유형을 구분하는 지표와 그 지표를 이용하여 농가를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분석 방법으로 다변량 통계분석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인자분석(factor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이용한다.
- 맞춤형 농정과 농가 유형 구분과 관련된 국내외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과 법제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외국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된 국가들은 EU, 독일, 일본 등이 된다.

## 3. 선행 연구 검토

- 농업지역의 유형화는 국내에서 많이 연구된 적이 있으나(이정환 1987, 이상학 1995, 김정호 외 2005), 통계기법을 이용한 농가의 유형화는 드물다. 정홍우 외(1989)는 경기도 광주군 능서면의 2개 부락에서 임의로 표본 추출한 33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농가 유형을 구분한 바 있다. 이 연구의 농가 유형화의 기준은 경지규모와 품목이었다. 따라

서 분석 대상이나 유형 구분의 기준에 있어 이 연구는 전국적인 농가 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 유형화의 판단자료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 외국 연구에서도 농가의 유형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Hardiman, Lacey and Yi(1990)는 Central North China 지역의 영농 형태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사용하였고, Bernhardt, Allen and Helmers(1996)도 영농시스템을 나타내는 작목재배 변수들을 이용하여 Nebraskan 농가를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적이 있다.



## 제 2 장

# 맞춤형 농정의 추진배경과 기본틀

### 1. 맞춤형 농정의 추진배경

#### 1.1. 농정 변화의 세계적 추세

- 오늘날 EU를 포함한 구미 선진국들의 농정 동향을 보면 전통적인 농업보호정책에서 시장 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이행하고 있다.
- 농정 목표는 국가적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보다는 지역 차원의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 차원의 “소득 증대”가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 정책 수단은 평균적인 농업발전 시책보다는 경영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 농외소득원 개발, 사회복지 서비스 등 개별적이고 특성화된 소득·복지시책이 강화되는 경향이다.
  - 추진 방식은 정부 주도의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메뉴 선택 방식”(cafeteria style program)이 보편화되고 있다.

표 2-1. 세계 농업과 농정의 흐름

시기 및 특징	주요 정책 내용, 성과
1960~70년대 생산·가격정책에서 구조정책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혁명과 가격지지를 바탕으로 식량증산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산을 통한 소득문제 해결에는 근본적 한계 노출</li> </ul> </li> <li>○ 1960년대를 전후로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공 간 소득균형을 동시에 추구</li> </ul>
1980년대 효율주의 농업의 한계와 지역정책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지지와 수출보조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공급과잉은 UR 협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li> <li>- 생태계 순환체계의 붕괴, 환경오염 문제 노출</li> </ul> </li> <li>○ 1980년대 초부터 조건불리지역 농업 유지에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자원 및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li> </ul> </li> </ul>
1990~2000년대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업, 식품안전성, 농촌 경관 등에 관심 증대</li> <li>-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li> </ul> </li> <li>○ 보호 농정에서 시장 지향적 농정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문제는 직접지불제로 접근</li> </ul> </li> </ul>

### 1.1.1. 독일

- 유럽 각국은 1960년대 들어 자립경영 육성정책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독일은 1970년대에 선별적 농가육성에 기초한 강력한 농업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대농 중심의 규모화에 성공하였다.
- 에틀플랜(Ertl Plan)으로 명명된 서독의 구조정책은 “농업에 가능한 한 많은 인력을 유지시키려고 한 종래의 원칙은 농업과 타 산업과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농산물 시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가소득의 증대는 농업종사자 수의 대폭적인 삭감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라는 정책 기초를 유지하였다. 당시 서독은 농가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 ① 이농·은퇴희망농가: 직업훈련, 경영이양연금
  - ② 잔류농가: 규모화자금
  - ③ 과도적 농가: 최저생계지원 등 사회보장

- 2000년대에 독일은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을 수용하면서 2000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독일에서 농업전환(Agrarwende)이라는 농정 패러다임이 새로이 대두한 배경은 광우병 파동 이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농정의 최우선 과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 독일의 연방농림성은 2001년 1월 부서명을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성”으로 개명하고, 업무 영역을 소비자 보호와 식품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 현재 독일의 농업은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간의 과도기에 놓여있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정의 기본 방향 또한 농업생산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데 두고 있다.

### 1.1.2. 일본

- 일본은 1961년에 농업기본법을 통해 “자립경영농가” 육성을 법제화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당초 의도한 자립농가는 현재까지도 전농가의 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자립농가 육성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1970년대부터 “중핵농가”, “새로운 상층농”, “기업적경영” 등으로 정책 대상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 1995년부터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선별적인 농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정농업자 제도는 의욕과 능력을 가지고 농업경영의 전문가를 지향하는 자로서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시정촌이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체계이다(근거법: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 이 제도는 정책 대상을 지자체가 지역의 부존자원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인데, 인정농업자는 성별, 전·겸업별 제한은 없으며, 단지 경영규모 대소, 영농유형, 법인경영 등에 대해서는 시정촌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설정된다.
  - 인정농업자에게는 금융, 세제, 연금 등의 지원조치가 있으며, 2007년부

- 터 실시되는 ‘품목횡단적 경영 안정대책’의 직접지불 대상이 된다.
- 인정농업자 수는 2005년에 19만 2,941인(그 중 법인 8,186)으로 전체 농가의 7% 정도에 해당한다.

## 1.2. 우리나라의 농가육성정책 추진경과

- 우리나라는 1962년 농림부가 발표한 「농업구조개선대책」에서 자립경영의 개념을 도입하고 농가육성을 포방하였으며, 이러한 정책 이념을 담아 “농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당시의 자립경영은 ①농업 노동력이 정상적인 보수를 향유하고, ②정상적인 능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농업기본법(1967) 제17조는 ‘자립 가족농의 육성’이라는 표제하에 “정부는 경영 능률의 향상과 가족경영의 정상적인 노동 보수 및 타 산업 종사자와의 소득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립 가족농을 육성함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자립경영과 함께 1963년에 5개 지구의 협업농장 육성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 정착에 실패하였다.
- 농가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1980년부터 추진한 “후계자 육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농업인력 부족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정부는 1980년 9월에 농어민후계자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해 11월에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을 제정하였다.
  - 1981년부터 시작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1992년부터는 매년 1만 명씩 선정하는 체제로 대폭 확대되었다가, 1997년부터는 어업후계자를 해양수산부에 이관하여 농림부가 농업인후계자 육성을 담당하고 있다.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총 123,477명의 후계농업인을 지원하였다.
- 1992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업농 육성사업이 시작되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덕분에 정착하게 된 농업경영인에 대한 후속

지원시책이 절실히 요청되면서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전업농어가 육성”을 규정하였다.

- 1992년의 전업농 육성사업은 연간 1천명 정도의 농어를 선정하여 5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1994년에는 경영 능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전업농가에 대해 경영규모 확대, 기계화, 시설자동화 등을 종합 지원하도록 사업 내용이 대폭 확충되었다.
- 원예와 축산 등의 품목별 전업농 육성은 2000년부터 종합자금지원으로 통합되어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쌀전업농만이 영농규모화사업으로 계속되어 2004년까지 육성된 쌀전업농 수는 84,821호에 달한다.
- 1990년에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되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의 협업경영체이며,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서 1995년에 기존의 위탁영농회사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 2004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 5,492개소, 농업회사법인이 1,067개소에 이른다.

## 2. 맞춤형 농정의 필요성과 의의

### 2.1. 수요자의 정책요구 충족

- 정책의 수요자에게 맞는 차별적인 농정을 추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는 농업인(경영체)의 인적 조건과 영농 능력, 영농 목적, 경영체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평균적이고 획일적인 농업정책으로는 농업인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 농가의 경제 사회적 동질성이 약화되어 경영규모나 작목, 상업화와 겸업화 정도, 경영주의 연령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전업농, 비농업에 주로 취업하는 겸업농, 경영

은퇴를 앞둔 고령농, 영농규모가 영세한 자급농이나 취미농 등은 요구하는 정책 프로그램이 각각 상이하다.

- 따라서 “맞춤형 농정”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은 경쟁이 가능한 전업농에 집중하고, 영세·고령농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맞춤형 농정”을 통해 다양한 성격의 농업인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고객서비스(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PCRМ)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들은 영농과 생활에 대한 장기적인 인생설계를 도모할 수 있다.

## 2.2. 농정 추진 방식의 혁신

- “맞춤형 농정”은 농업구조정책의 발전 단계로서 선택적 정책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마무리되는 체계가 될 것이다.
  - 문민정부(1993~97년) 시절에는 전업농을 중심으로 규모화를 지향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 절감 기술, 영농규모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는데, 하향식 추진 방식으로 인해 이러한 과정이 “엘리트 농정”이라는 비판이 받게 되었다.
  - 국민의 정부(1998~02년) 때는 규모화·대농의 한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중소농과 경영 안정이 부각되면서 중소규모로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하는 친환경농업 및 안정적 가족농 육성에 중점이 두어졌다. 따라서 전문 경영체 육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참여정부(2003~07년)는 소득·복지시책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하에서 농업의 수익성 저하 및 농가소득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 등을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하여 구조정책의 종합적인 체계화(산업정책+복지정책)를 추구할 시점이 되었다.

- “맞춤형 농정”은 농정 추진 방식의 일대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에 시달하면 시·군이 이를 집행하는 “하향식 농정”이었으나, 1995년 통합실시요령이 도입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상향식 농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 맞춤형 농정은 최종 수혜자인 농업인에게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식이며, 상향식 농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 3. 맞춤형 농정의 추진방향

#### 3.1. 개념 정립

- “맞춤형 농정”이란 정부가 정책 수혜자(농업경영체)의 유형별로 정책 프로그램을 메뉴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가 스스로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정책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농정 추진 방식을 말한다.
  - 농업인 개개인에게 정책을 맞춤형이라는 의미보다는 유형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이를 농업인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된다.
  - 농가 특성을 반영한 형태가 “농가 맞춤형”이며, 지역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으로 확장될 수 있다.
- “맞춤형 농정”은 현행 정책수단(제도, 투융자)을 수요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정책의 만족도와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추진방식이다.
- “맞춤형 농정”은 농정 추진 방식의 혁신이며, 현행 정책수단(제도, 투융자)을 수요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정책의 만족도와 실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추진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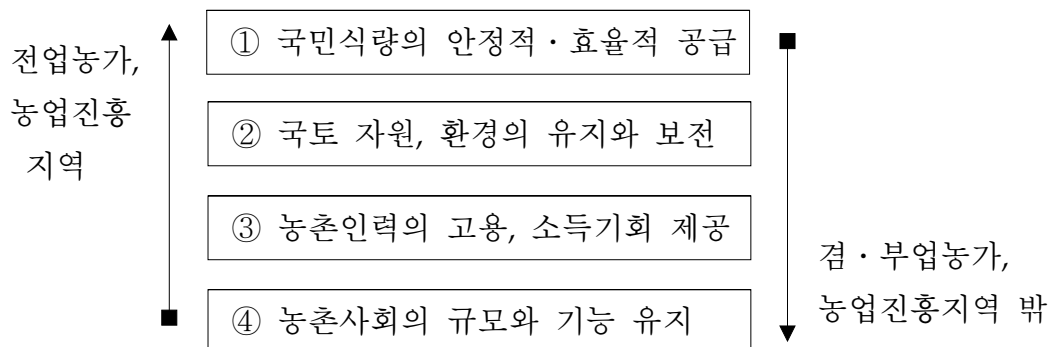
## 3.2. 농업구조정책의 체계화

- 맞춤형 농정의 추진은 농업구조정책을 완성하고 체계화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다.

### 3.2.1. 농업의 기능을 분담하는 체계의 확립

- 농업의 국민경제적 기능은 국민의 식량 공급, 국토자원 및 환경의 보전, 농촌인력의 고용과 소득기회 제공, 농촌사회의 규모와 기능 유지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및 농가 유형별로 적절하게 일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식량안보 기능은 전업농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기능이기에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업농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지만, 진흥지역 밖의 겸업농가가 담당하게 되는 고용 창출이나 농촌사회 유지 등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 된다.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세농의 무리한 이농·탈농 촉진보다는 다수의 농가를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일을 분담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그림 2-1. 농업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분담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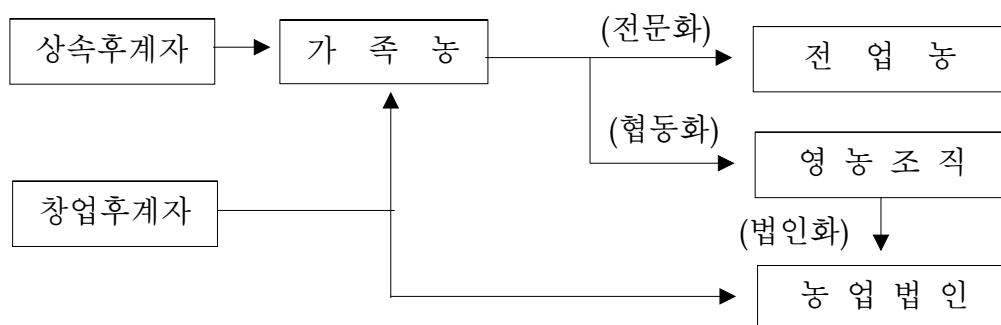




### 3.2.2. 다양한 경영주체를 육성하는 제도의 확립

- 우리 농업의 근간은 가족농(family farm)이며 앞으로도 가족농 체제가 발전할 것이지만, 농가 이외의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공존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 상속농가의 후계자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이 창업농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산업자본과 기술이 원활하게 농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기존에 ‘사람’ 단위로 지원된 정책을 ‘경영’ 단위로 전환하고 각종 정책자금을 종합자금화함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경영 능력이 우수한 전업농에게 농지를 비롯한 자원이 집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생산조직을 적극 장려하고, 농업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체로서 중소기업 수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협업경영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유통의 과정에서 가족농과 협력하는 보완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그림 2-2. 농업인력과 농업경영체 육성의 체계



### 3.2.3. 농가의 발전 단계별로 정책수단을 차별화하는 체계의 확립

-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농가의 발전유형별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강제적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전업농과 겸업농은 농업정책의 주된 대상으로서 경영 개선을 지원하는 반면, 이농·탈농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산업정책, 과도적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책 등으로 정책수단을 차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벼농사의 경영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전문화 → 전업화 → 기업화 등으로 경영 형태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각각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정책수단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표 2-2. 벼농사 농가의 경영발전 단계별 정책 프로그램 예시

단계별	경영규모	정 책 방 향
IV (선도농가)	5ha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력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 유도, 일부분 정부 지원</li> <li>○ 고품질·비용절감·생력화 농법의 정착</li> <li>○ 경영 안정제를 통한 소득안전망 구축</li> </ul>
III (자립지향 농가)	3~5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모 확대 지원</li> <li>○ 기술·경영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통한 경영능력 배양</li> <li>○ 지역 여건, 가족노동력 등을 고려한 복합영농 추진</li> </ul>
II (성장지향 농가)	1~3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규모 확대를 집중 지원</li> <li>○ 기계화·생력화 기술체계의 확립을 도모</li> <li>○ 외연적 규모 확대가 어려운 농가는 친환경농업 또는 고부가가치농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보급</li> </ul>
I (과도적농가)	1ha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농 등 생산성이 낮은 농가는 경영이양직접지불 등을 통해 은퇴를 적극 유도하여 농지유동화 촉진</li> <li>○ 고령농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농가에 대한 복지 지원</li> </ul>

### 3.3. 맞춤형 농정의 추진 원칙

- **목표의 명확성** :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단이나 방법이 구체화될 수 없으며, 시행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목표와 방향이 뚜렷해야 한다.
- **수단의 차별성** :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으로 나누어 정책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산업정책과 형평성이 핵심인 복지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 **대상의 배타성** : 경영체 유형별로 배타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상충성과 중복성을 배제해야 한다. 정책 프로그램이 배타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맞춤형 농정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며,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 **적용의 형평성** : 정책 프로그램의 적용이 불균형하지 않도록 양적 또는 질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동안 전업농의 산업정책 중심이었기 때문에 영세고령농가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며, 따라서 농정 차원의 복지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선택의 자율성** : 농업인 스스로가 필요한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정부의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수혜자인 농업인이 선택하는 자율성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 3.4. 맞춤형 농정의 실시 조건

#### 3.4.1. 정책 수립의 단계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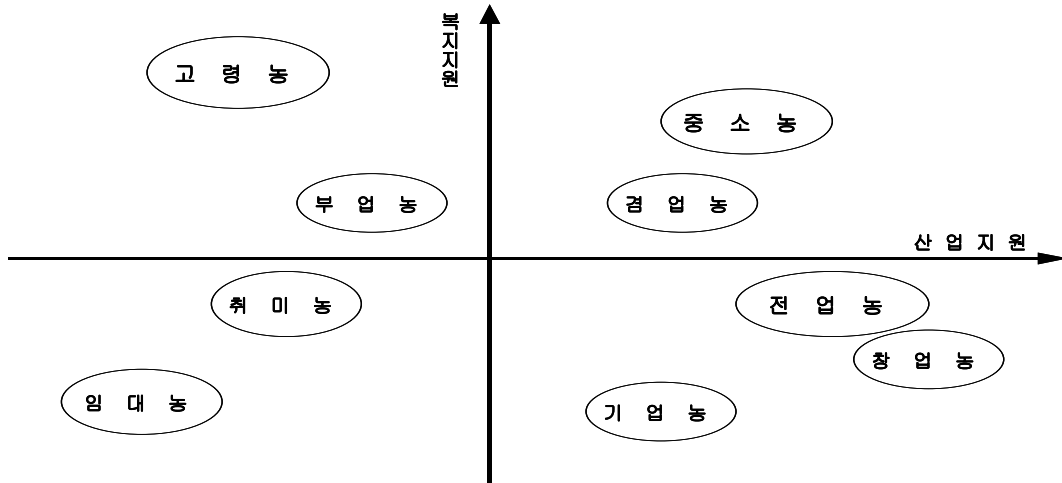
- “맞춤형 농정”의 규모 설정: 농업경영체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투융자 사업의 범위와 내용 및 규모를 설정한다.

- 생산정책과 복지정책의 구분: 현행 농림사업의 성격을 구분하고 보완되어야 할 추가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특히 농정 차원의 복지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기본적(core) 프로그램과 선택적(option) 프로그램의 구분: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적 정책수단과 추가적으로 농업경영체가 선택 가능한 메뉴를 제시한다.
  - 직불제 예시: 기본적 지원(고정직불) + 선택적 지원(변동직불)
- 의무 참여와 자율 참여의 구분: 특정시책에 대한 의무 사항을 부여한다.
  - 의무 참여 사업: 보조금 지원의 부가조건(예: 생산조정)
  - 자율 참여 사업: 각종 융자사업

### 3.4.2.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 농업인이 아니라 농업경영체의 유형 구분이 요구되는데, 농업경영체로서 현재의 경영 실태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농가 유형 구분이 필요하다.
  - 기존에 사용되어 온 농가 유형과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대분류)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차로 구분한 농가 유형이 고정적이지 않고 경영 실적에 따라 소속 집단 변경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 농가의 유형화를 위해서도 단계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 ① 제1단계(농업경영체 여부): 농산물 판매액 기준
    - 농업인 정의에 의한 경영규모 하한보다 상향조정(예: 연간 500만원)하여 “자급형”과 “판매형”으로 구분
  - ② 제2단계(경영체 성격): 농업경영의 발전 가능성 기준
    - 경영주 연령, 영농자산 규모, 가족 구성, 기간종사자 유무, 후계자 참여 등을 고려하여 “전업형”과 “부업형”으로 구분
  - ③ 제3단계(정책 대상): 농업경영체 단위의 (총)소득 기준
    - 정부지원과 공적부조의 필요성에 따른 “자립형”과 “보호형”으로 구분

그림 2-3. 정책수단별 농가 유형 구분 모식도



### 3.5. 맞춤형 농정의 추진시스템

#### (1) 농가등록제 실시

- 기초등록사항으로 영농종사자, 경작지규모, 재배작목, 사육두수 등을 등록하게 해서 직불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상세등록사항으로 경영실적, 영농교육실적, 정책수혜실적 등을 등록하게 해서 그 밖의 농림사업의 데이터로 활용한다.
- 일차로 농가등록제를 시행한 후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로 확대한다.

#### (2) 농림사업시행지침의 개정

- 정책수요에 맞게 기존 정책사업을 조정한다. 여기서 농업지원정책, 농업인소득정책, 농촌복지정책 등 각종 정책사업(121개 예산사업)을 분석하여 부족한 프로그램을 보완한다.

#### (3) 정책자금 메뉴화

-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융자사업을 종합자금화하되, 자금의 성격에 따

른 메뉴화로 선택의 폭을 넓힌다.

- 영농시설자금(농지, 시설 등), 운영자금, 경영 안정자금 등으로 구분

(4) 행정조직 설치

- 농림부에 “맞춤형 농정팀” 구성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농정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한다.
- 지자체에 “맞춤형농정담당” 설치하여 도와 시·군 단위로 맞춤형 농정의 집행기구 역할을 하도록 한다.

## 제 3 장

# 유형화를 위한 농가구성 실태 분석

### 1. 농가구성 현황

- 여기서는 농가 유형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농가구성 실태와 농가 분포 변화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한다. 농가구성 실태 및 추이 분석을 위해 농림부에서 발간하는 농림업 주요 통계와 통계청에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된 1995년, 2000년 농업총조사를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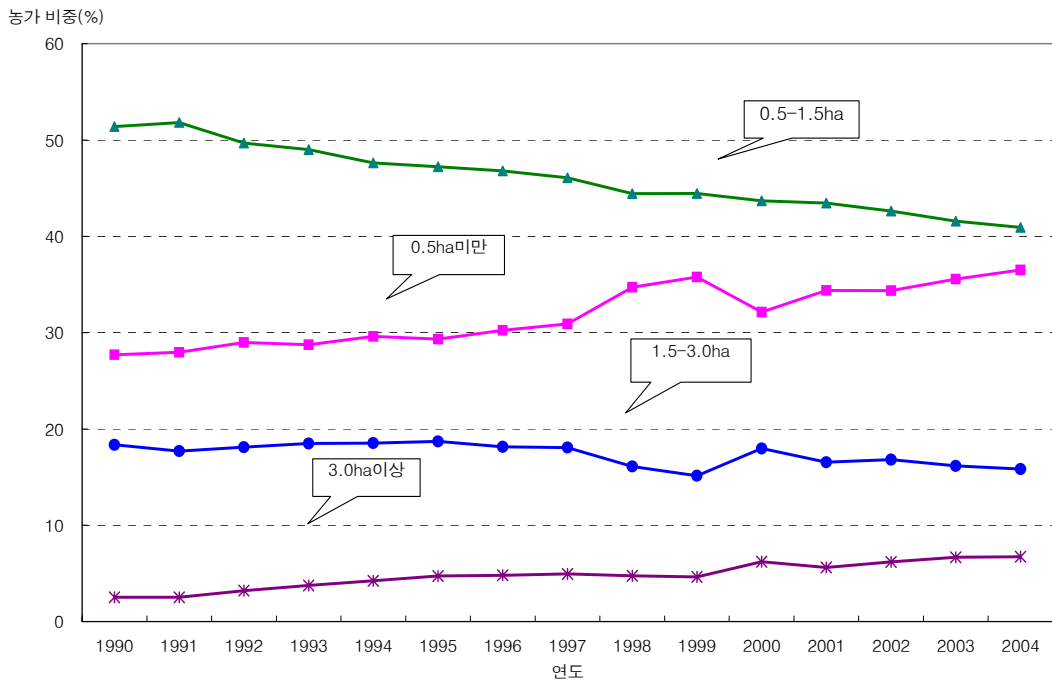
#### 1.1. 농가 분포 변화

- <그림 3-1>은 1990년 이후 각 연도의 총 농가 수에 대한 경지규모별 농가 수의 비중을 나타낸다. 1.5ha 이상의 농가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0ha 이상의 농가 비중은 상대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또한 0.5ha 미만의 영세농가의 비중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0.5~1.5ha 농가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3.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비중과 0.5ha 미만의 영세 농가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중간규모 계층(0.5-1.5ha)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서 경지규모 계층이 양극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대농층이 비  
대해지는 것은 농업구조 개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농가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3-2>은 1990년 이후 연령별 농가인구 분포의 추이를 나타낸다. 19세 이하의 젊은 계층이 총 농가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49세 농가인구의 비중도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고령농가인구(60세 이상) 증가율과 젊은 농가 인구(19세 이하) 감소율의 차이는 현격히 벌어지고 있다. 50대 농가인구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2000년 이후 서서히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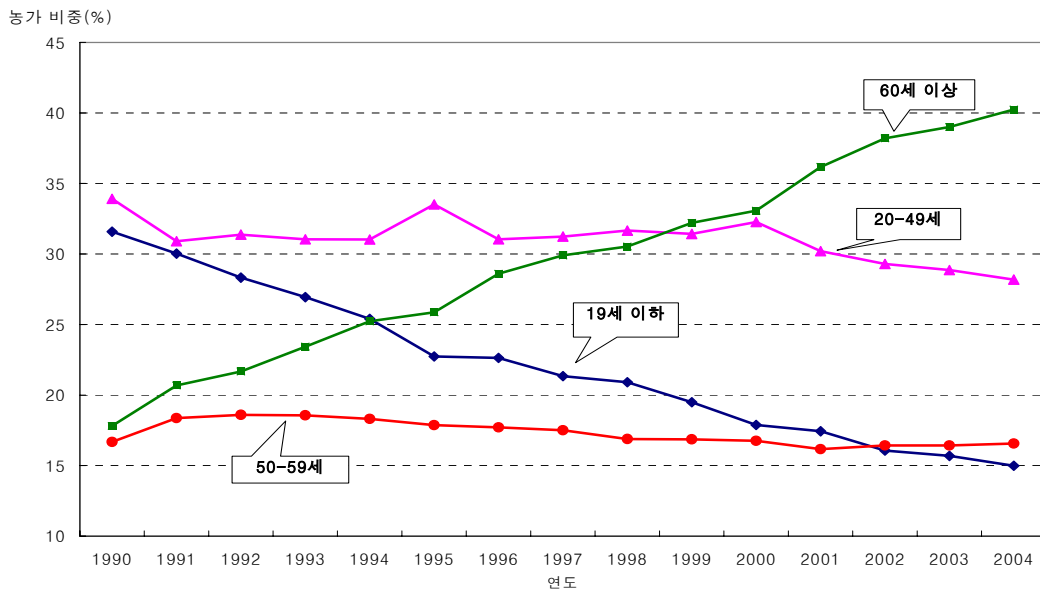
그림 3-1. 경작규모별 농가의 분포 추이



주: 경지 없는 농가 제외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5』



그림 3-2. 연령별 농가인구 분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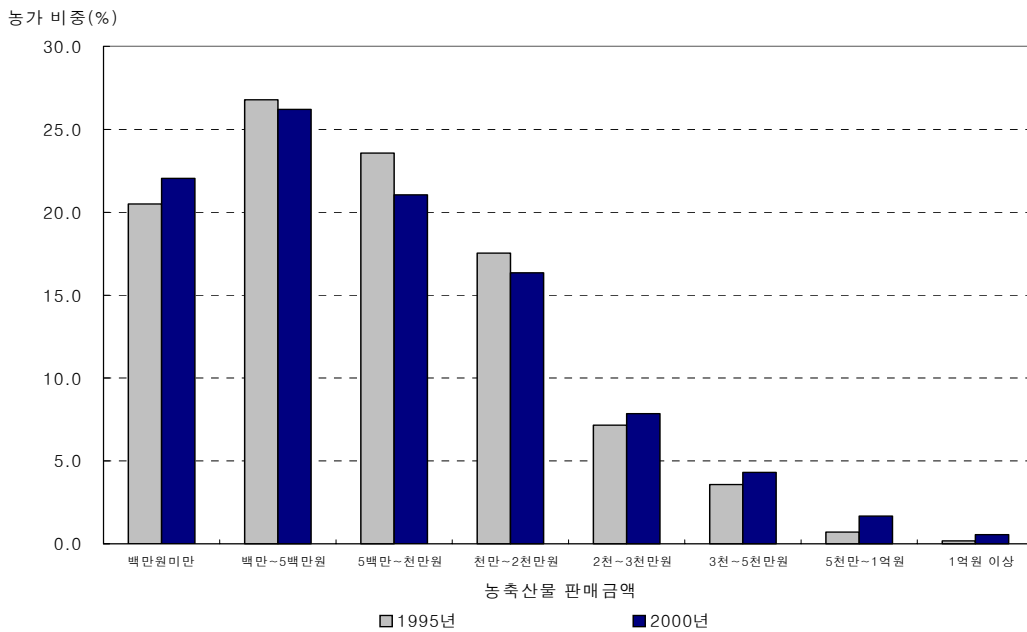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5』

- 농가의 소득 분포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된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농업총조사 자료는 5년마다 조사·발표되므로 현재 이용 가능한 최근 자료인 1995년과 2000년의 통계를 이용했다. 또한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소득이 조사되지는 않고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조사된다. <그림 3-3>는 1995년과 2000년의 각 전체농가에서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비중을 나타낸다.
-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영세농의 비중이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판매액이 2,000만 원 이상인 농가의 비중은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비중이 2000년에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100만~2,000만 원 판매실적을 가지고 있는 농가 비중은 2000년에 감소하였다.
- 따라서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분포는 판매수입이 높은 계층(2천만 원 이상)과 판매수입이 낮은 계층(백만 원 미만)의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양극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농지와 인적 자본 등 농업자원은 대농계층으

로 집중되어 고소득 계층의 비중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고령 영세농 계층의 비중도 증가하여 농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3.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분포 추이



주: 1995년과 2000년 농업총조사상의 전체 농가 수는 각각 1,500,745호와 1,383,468호임.  
100만원 미만 농가에는 판매실적이 없는 농가도 포함.  
자료: 농업총조사 1995년, 2000년.

## 1.2. 농가구성의 특징

- 농가구성의 실태 및 특징은 최근의 농업총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2000년 전체 농가의 경지규모, 농축산물 판매금액, 경영주 연령의 분포 및 관계를 분석한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에 경지가 1ha 미만인 동시에 농산물 판매액이 천만 원 미만의 농가가 전체 1,383,468 농가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1억 원 이상의 판매금액을 가진 농가의 0.12%가 5ha 이상의 대농이었고 또한 0.14% 농가가 1ha 미만인 농가이다. 여기서 1ha 미만 농가에는 축산농가와 시설원예 농가가 포함되어 있다.

표 3-1. 경지규모별 판매금액별 농가 분포 (2000년)

단위: 호

구 분	1ha 미만	1.0~2.0ha	2.0~3.0ha	3.0~5.0ha	5.0ha이상	합계
천만원 미만	736,736 (53.25)	188,062 (13.59)	21,754 (1.57)	4,196 (0.30)	812 (0.06)	958,380 (69.27)
1천~3천만원	69,035 (4.99)	145,455 (10.51)	76,358 (5.52)	34,194 (2.47)	6,229 (0.45)	334,760 (24.20)
3천~5천만원	7,834 (0.57)	13,170 (0.95)	11,986 (0.87)	17,238 (1.25)	8,012 (0.58)	59,510 (4.30)
5천~1억원	3,678 (0.27)	3,640 (0.26)	2,912 (0.21)	4,607 (0.33)	6,967 (0.50)	23,146 (1.67)
1억원 이상	1,977 (0.14)	1,207 (0.09)	780 (0.06)	833 (0.06)	1,626 (0.12)	7,672 (0.55)
합계	819,260 (59.22)	351,534 (25.41)	113,790 (8.22)	61,068 (4.41)	23,646 (1.71)	1,383,468 (100)

주: 경지가 없는 농가는 제외함.

자료: 농업총조사 2000.

- <표 3-2>는 2000년 영농 형태별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분포를 나타낸다. 5천만 원 이하의 농산물 판매금액에서는 논벼 농가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5천만 원 이상에서는 축산농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영농 형태가 논벼 중심의 농가인 동시에 농산물 판매금액이 천만 원 미만인 농가의 비중은 42.4%로 매우 높다. 따라서 쌀 전업농가는 영세농에서 고수입 대농계층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3>은 경영주 연령별 판매금액별 농가 분포를 나타낸다. 농산물 판매금액이 천만 원 미만인 동시에 경영주 연령이 60대인 농가의 비중은 26%로 가장 높고, 경영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농가의 비중도 15%로 높은 편이다. 경영주 연령이 40대인 동시에 판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의 비중은 0.25%로 1억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린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가장 높다.

표 3-2. 영농 형태별 판매금액별 농가 분포 (2000년)

단위: 호

구 분	논벼	채소	과수	축산	특용작물	합계
천만원 미만	586,257 (42.38)	151,471 (10.95)	80,260 (5.80)	31,679 (2.29)	19,578 (1.42)	958,380 (69.27)
1천~3천만원	169,715 (12.27)	67,352 (4.87)	52,451 (3.79)	21,086 (1.52)	12,901 (0.93)	334,760 (24.20)
3천~5천만원	23,038 (1.67)	14,596 (1.06)	8,170 (0.59)	7,600 (0.55)	3,623 (0.26)	59,510 (4.30)
5천~1억원	7,439 (0.54)	4,84 (0.30)	2,35 (0.16)	6,794 (0.49)	1,286 (0.09)	23,146 (1.67)
1억원 이상	897 (0.06)	587 (0.04)	226 (0.02)	3,586 (0.26)	203 (0.01)	5,865 (0.42)
합계	787,403 (56.92)	238,207 (17.22)	143,352 (10.36)	70,750 (5.11)	37,594 (2.72)	1,383,468 (100)

주: 판매금액이 없는 농가는 '천만 원 미만' 농가에 포함되었음.

화훼, 전작, 기타 영농 형태에 대한 농가 분포는 표에서 생략하였음.

자료: 농업총조사 2000.

표 3-3. 경영주 연령별 판매금액별 농가 분포 (2000년)

단위: 호

구 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합계
천만원미만	52,752 (3.81)	127,760 (9.23)	213,389 (15.42)	361,244 (26.11)	203,235 (14.69)	958,380 (69.27)
1천~3천만원	26,713 (1.93)	75,453 (5.45)	106,484 (7.70)	104,869 (7.58)	21,241 (1.54)	334,760 (24.20)
3천~5천만원	7,185 (0.52)	21,179 (1.53)	19,619 (1.42)	9,962 (0.72)	1,565 (0.11)	59,510 (4.30)
5천~1억원	3,472 (0.25)	9,846 (0.71)	6,684 (0.48)	2,686 (0.19)	458 (0.03)	23,146 (1.67)
1억원 이상	1,394 (0.10)	3,499 (0.25)	1,891 (0.14)	724 (0.05)	164 (0.01)	7,672 (0.55)
합계	91,523 (6.62)	237,754 (17.19)	348,092 (25.16)	479,520 (34.66)	226,679 (16.38)	1,383,468 (100)

주: 판매금액이 없는 농가는 '천만 원 미만' 농가에 포함되었음.

자료: 농업총조사 2000.

- 경영주 연령과 경지규모 분포의 관계는 <표 3-4>로 알 수 있다. 경영주 연령이 60대이면서 1ha 미만의 경지 규모를 가진 농가의 비중은 21%로 가장 높다. 5ha 이상의 경지규모 가지면서 경영주 연령이 40대인 농가 비중은 0.66%로 이 규모계층에서는 그 비중이 가장 높다.
- 농가구성을 경지규모, 농산물 판매금액, 경영주 연령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경영주 연령이 낮을수록 경지규모가 크고 농산물 판매금액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가는 경지규모도 적고 농산물 판매실적 낮게 나타났다.

표 3-4.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 (2000년)

단위: 호

구 분	40세 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합계
1ha 미만	50,278 (3.63)	119,157 (8.61)	179,593 (12.98)	290,177 (20.97)	180,055 (13.01)	819,260 (59.22)
1.0~2.0ha	20,511 (1.48)	58,955 (4.26)	98,891 (7.15)	136,182 (9.84)	36,995 (2.67)	351,534 (25.41)
2.0~3.0ha	8,415 (0.61)	26,415 (1.91)	38,150 (2.76)	34,702 (2.51)	6,108 (0.44)	113,790 (8.22)
3.0~5.0ha	6,284 (0.45)	19,376 (1.40)	20,690 (1.50)	12,752 (0.92)	1,966 (0.14)	61,068 (4.41)
5.0ha 이상	3,409 (0.25)	9,168 (0.66)	7,090 (0.51)	3,373 (0.24)	606 (0.04)	23,646 (1.71)
합계	88,903 (6.43)	233,087 (16.85)	344,438 (24.90)	477,220 (34.49)	225,746 (16.32)	1,383,468 (100)

주: 경지가 없는 농가는 제외함.

자료: 농업총조사 2000.

## 2. 군집분석을 이용한 농가 유형 분석

### 2.1. 분석 자료

-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2004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농가경제

조사 원자료이다. 이 자료는 9개 도에서 표본 추출된 3,056 농가 자료이다. 2004년 농가경제 원자료에서 농가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농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형화의 판단자료를 가능한 많이 추출한다.

- 인자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하여 농가 특성을 나타내는 수십 개의 변수에 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통합지표인 소수의 공통인자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의 수가 많다는 것이 분석상의 난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인위적인 변수의 취사선택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 가능성을 고려하여 농가 유형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표 3-5>의 21개 변수를 선정한다. 이들 변수는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지면적, 영농시간, 농업자본은 생산 투입요소로서 경영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농업부가가치, 농업소득,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자본생산성은 농가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표 3-5. 농가 특성 변수

범 주	변 수
경영규모지표	경지면적, 농업자본, 영농시간
경영성가지표	농업부가가치, 농업소득,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자본생산성
경영주의 경영능력지표	연령, 교육수준
영농형태지표	쌀 수입 비중, 채소수입 비중, 과수수입 비중, 축산수입 비중
농가경제실태	가족구성원수, 임차농지 비율, 농외소득(겸업소득, 사업외 소득, 이전소득), 가계비, 부채비율

- 주: 1. '농업부가가치'는 농업조수입에서 중간재비와 감가상각비를 제한 값이다. 중간재비는 농업경영비에서 노임과 임차료를 제한 값이다.
2. '노동생산성'은 투입된 농업노동량과 그 결과로서 얻은 산출액의 비율로 농업부가가치를 영농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3. '자본생산성'은 투입된 자본에 대한 산출액을 말하며 농업부가가치를 농업자본액으로 나눈 값이다.
4. '토지생산성'은 토지면적당 산출액을 말하며 농업부가가치를 경지면적(10a)로 나눈 값이다.
5. '부채비율'은 농업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영주의 경영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경영주의 연령과 교육연수 변수를 사용한다. 농가의 영농 형태(작목구성 형태)를 나타내는 변수로 농업총수입에서 쌀 수입, 채소수입, 과수수입, 축산수입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한다. 그 밖에 가족구성원수, 임차농지 비율, 농외소득(겸업소득, 사업외 소득, 이전소득), 가계비, 부채 비율은 농가경제 실태를 나타내는 변수들이라 볼 수 있다.

- 위의 농가 유형을 나타내는 21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3-6>에 정리되어 있다.

표 3-6. 기초 통계량

변 수	단위	평균	표준편차
경작면적	ha(ha)	1.73	2.07
농업자본	백만원	7.08	7.31
영농시간	시간	752.21	811.82
가족구성원수	명	3.14	1.38
농업부가가치	백만원	17.54	23.23
농업소득	백만원	11.36	17.56
노동생산성		28,686	122,939
토지생산성		7,806,698	199,000,000
자본생산성		3.19	3.25
경영주 연령		59.80	10.55
경영주 교육연수	연도	7.93	3.53
쌀 수입 비중		0.46	0.43
채소수입 비중		0.25	0.31
과수수입 비중		0.11	0.32
축산수입 비중		0.09	0.21
임차면적 비율		0.37	0.35
겸업소득	백만원	2.23	7.15
임금소득	백만원	6.09	10.15
이전소득	백만원	2.69	4.01
가계비	백만원	22.99	19.29
부채 비율		0.15	0.25

## 2.2. 분석 방법

- 선정된 21개의 변수를 가지고 농가 유형 구분을 위한 군집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21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유사성이 있는 변수들을 몇 개의 공통인자로 통합하는 인자분석을 실시한다.
- 변수들의 측정 척도가 서로 다르므로 우선 모든 변수들을 표준화한다. 표준화된 변수들의 상관계수행렬에서 전체변수의 변동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통합지표인 공통인자들과 원변수(또는 일차변수)들 간의 관련도를 인자부하행렬(factor loading matrix)로 나타낼 수 있다.
-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흔히 사용한 기준인 고유치(eigen value)가 1을 넘어서는 인자들만을 선정한다. 인자부하행렬에서 각 공통인자가 특히 높은 관련을 맺고 있는 일차변수들을 통하여 공통인자가 갖고 있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 각 공통인자는 몇 가지 일차변수의 변동을 주로 설명하는 통합지표라 할 수 있다.
  - 21개의 변수들로부터 21개의 공통인자를 추출할 수 있으나 변수들간 변동에 관한 정보를 집약하는 중요도는 공통 인자들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또한 인자분석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차후 군집분석 등 다른 분석을 위해서도 전체변동의 어느 정도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수의 주요한 인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 인자분석에서는 횡축과 종축의 회전을 실시하여 각 공통인자의 원변수의 통합 지표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직교 회전(orthogonal rotation procedure)인 바리막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한다(Hair, Anderson, Tatham and Black, 1995).
- 고유치가 일정 수준을 넘는 공통인자가 선정되면 공통인자와 일차변수와의 관련을 나타내는 인자부하행렬을 통하여 각 인자별 득점(factor score)을 구할 수 있다. 인자별 득점을 계산하기 위해 이 연구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회귀분석 방법(regression methodology)을 이용한다.
- 공통인자가 만든 n차원 직교공간상의 인자득점에 의해 각 농가를 위치하도록 하여 농가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군집분석(clu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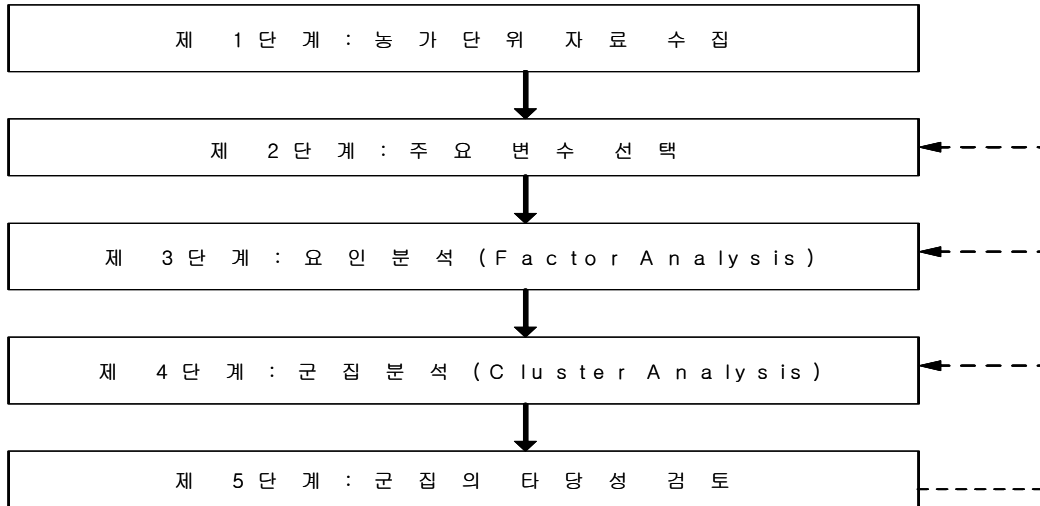
analysis)이다.

- 군집분석은 다수의 개체를 몇 가지 군집으로 분류하여 같은 군집에 속하는 개체들 간에는 서로 유사하고 다른 군집에 속하는 개체들 간에는 서로 상이한 속성을 지니도록 개체를 그룹화하는 분석 방법으로 사용된다.
  - 군집분석은 집단의 수, 구조에 대한 가정이 없으며 오직 개체들 간의 유사성과 이질성(similarity and dissimilarity) 또는 거리에 의하여 군집을 형성하고 특성을 파악하여 군집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 즉, 군집분석은 분명한 분류기준이 없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 군집분석에 있어서는 농가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거리의 계산방식에 따라 몇 개의 대안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군간의 거리를 중앙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k-medians 비계층적 분류법을 적용한다.<sup>1</sup>
- 이 분석은 통계패키지 STATA 9.0을 이용하였으며 고유치 1.0 이상의 인자를 선정하고 군집분석에 있어서는 몇 개의 대안별로 분석 결과를 비교한 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군집수를 결정하였다. 최적 군집수에 대한 표준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종적인 군집수에 대한 몇 개의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선행조건, 현실적 판단, 상식이나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Hair et al. 1990, 이상학 1995).
- <그림 3-4>은 이 연구에서 농가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방법의 체계도이다.

---

<sup>1</sup> Everitt et al.(200)은 다양한 군집분석 방법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3-4. 농가 유형화 단계



## 2.3. 분석결과

### 2.3.1. 인자분석 결과

- 2004년 농가경제 조사상의 3,050 가구를 대상으로 21개 변수를 가지고 인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의 공통인자 7개가 선정되었다 <표 3-7>에서 7개 공통인자의 누적기여율은 61.2%로서 원래의 21개 변수에 관한 정보의 61.2%가 이 7개 공통인자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7. 공통인자와 누적기여율

요 인	고유값	기여율	누적기여율
제1인자	3.519	0.168	0.168
제2인자	1.981	0.094	0.262
제3인자	1.839	0.088	0.350
제4인자	1.679	0.080	0.430
제5인자	1.401	0.067	0.496
제6인자	1.326	0.063	0.559
제7인자	1.115	0.053	0.612

○ <표 3-8>의 회전된 인자부하행렬(rotated factor loading matrix)은 각 인자와 원래 21개 일차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각 공통인자는 모든 일차변수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소수의 일차변수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인자부하행렬의 상관도가 50% 이상) 이런 일차변수에 의해 각 공통인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제1인자는 농업부가가치 0.96, 농업소득 0.90, 경작면적 0.72, 영농시간 0.65, 농업자본 0.56 등으로 농가의 경영규모(생산요소 투입량)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변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공통인자는 농업경영규모 및 성과를 주로 나타내는 통합지표라고 볼 수 있다.

표 3-8. 인자부하행렬

변 수	제1인자	제2인자	제3인자	제4인자	제5인자	제6인자	제7인자
경작면적	<b>0.719</b>	0.000	0.164	-0.161	0.205	-0.270	0.110
농업자본	<b>0.562</b>	0.221	<b>0.556</b>	0.076	0.077	0.099	0.103
영농시간	<b>0.649</b>	-0.014	0.124	0.431	0.193	0.098	0.022
가족구성원수	0.163	0.641	0.261	0.032	0.177	-0.001	-0.068
농업부가가치	<b>0.957</b>	0.030	0.060	0.062	0.015	0.098	0.000
농업소득	<b>0.896</b>	0.001	-0.099	0.005	-0.098	0.135	-0.055
노동생산성	0.135	0.090	0.068	-0.329	-0.209	-0.106	-0.264
토지생산성	0.095	-0.048	0.006	0.016	-0.020	<b>0.531</b>	-0.160
자본생산성	<b>0.456</b>	-0.279	<b>-0.548</b>	-0.078	-0.023	-0.075	-0.179
경영주 연령	-0.265	<b>-0.514</b>	<b>-0.459</b>	-0.159	-0.121	-0.063	0.229
경영주 교육연수	0.163	<b>0.428</b>	0.398	0.135	-0.200	0.065	0.060
쌀 수입 비중	-0.130	0.006	0.017	<b>-0.773</b>	0.185	-0.221	0.052
채소 수입 비중	-0.075	-0.031	-0.027	<b>0.662</b>	0.129	-0.316	-0.006
과수 수입 비중	0.092	0.104	0.028	0.354	<b>-0.633</b>	-0.207	-0.060
축산 수입 비중	0.150	0.025	0.023	0.039	0.026	<b>0.826</b>	0.033
임차면적 비율	0.173	0.054	-0.065	0.060	<b>0.709</b>	-0.120	-0.040
겸업소득	0.043	-0.140	<b>0.736</b>	-0.149	-0.091	-0.061	-0.075
임금소득	-0.176	0.814	-0.150	-0.092	-0.069	-0.031	-0.074
이전소득	0.017	-0.069	-0.016	-0.039	-0.015	-0.014	<b>0.852</b>
가계비	0.242	<b>0.529</b>	0.173	0.008	-0.104	0.075	0.335
부채비율	0.125	0.045	0.365	0.315	0.444	-0.006	-0.205

- 제2인자는 가족구성원수와 0.64, 임금소득 0.81, 가계비 0.53, 경영주 연령과 -0.51, 경영주 교육연수 0.43 등으로 이 인자는 경영주의 인적 자본과 근로소득이 높은 농가를 나타내는 통합지표이다.
- 제3인자는 농업자본과 0.56, 자본생산성과 -0.55, 겸업소득과 0.74, 경영주 연령과 -0.46, 교육연수와 0.40 등으로 자본 투입이 높고 겸업<sup>2</sup>을 하고 있는 농가를 나타내는 통합지표이다.
- 제4인자의 인자부하행렬을 보면 농업총수입에서 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0.77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채소수입의 비중은 0.66, 과수수입의 비중은 0.35로 원예수입은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제2인자는 원예농업 중심의 농가를 나타내는 통합지표로 볼 수 있다.
- 제5인자는 임차면적 비율과 0.71, 과수수입과 -0.63, 부채 비율과 0.44의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임차면적 비율이 높은 농가를 나타낸다.
- 제6인자는 토지생산성과 0.53, 축산수입 비중과 0.83의 정의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축산 농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제7인자는 이전소득과 0.85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이전소득이 높은 농가를 나타낸다.

### 2.3.2. 군집분석에 의한 농가 유형화

- 인자분석에 의해 구해진 3,050 농가별 인자특점의 값을 이용하여 농가의 유형화를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다.
- 대안별 비교를 통해 전체 농가는 최종적으로 6개의 유형으로 군집화 된다. 일차 변수들의 평균값이 각 군집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다는

<sup>2</sup> 농외소득은 겸업소득과 사업이외소득으로 구성된다. 겸업소득은 농가가 농업 외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여 취득한 소득이고, 사업이외소득은 농가 가구원이 타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취업하여 벌어들인 임금소득과 재산소득을 포함한다. 겸업소득(Non-farm business receipts)은 원시 취득물, 임산물, 수산업, 농산가공, 상공광업, 농업 관련서비스업, 기타 등의 소득을 포함한다. 사업이외소득(Non-business receipts)은 임금소득(농업노임+기타노임+급료+기타급료)과 재산소득(농지임대료+기타임대료+배당금·이자+폐품수입+기타잡수입)을 포함한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값을 이용하여 두 군집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t-test를 이용한다.

- <표 3-9>은 6개 유형별 평균인자특점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농가는 제1유형에 487개 농가, 제2유형에 488개 농가, 제3유형에 180개 농가, 제4유형에 703개 농가, 제5유형에 851개 농가, 제6유형에 319개 농가로 나뉘어 있다.
  - 제1인자는 제1유형과 제3유형 군집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2인자는 제5유형과 제6유형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제4인자는 제1유형, 2유형, 4유형, 5유형에, 제5인자는 제2유형과 제4유형에 제6인자는 제3유형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7인자의 각 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

표 3-9. 유형별 평균 인자특점

구 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제1인자	0.777	0.053	0.546	-0.051	-0.230	-0.460
제2인자	0.039	0.152	0.159	-0.433	-0.622	1.708
제3인자	1.353	0.210	0.123	-0.169	-0.503	-0.243
제4인자	-0.727	1.131	0.232	0.618	-0.655	-0.452
제5인자	0.265	0.969	0.063	-0.829	0.094	-0.200
제6인자	-0.388	-0.320	2.920	-0.161	-0.090	-0.070
제7인자	0.095	-0.308	0.073	0.061	0.091	-0.047
농가수	487	488	180	703	851	319
(비율 %)	(16.0)	(16.1)	(5.9)	(23.2)	(28.1)	(10.5)

- 각 유형의 구체적인 특징을 일차변수들의 평균값으로 나타내면 <표 3-10>과 같다.
- 제1유형에 속한 농가들의 평균 농업부가가치는 3,441만원, 농업소득은 1,972만원으로 제3유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농업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 경지면적과 영농시간은 유형들 중 가장 크다. 경영주 연령은 52세, 교육수준은 9.4년으로 경영주는 다른 유형에 비해 젊고 교육수준이 높다. 농업총수입에서 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매우 높은

반면, 채소, 과수, 축산 수입 비중은 10% 이내로 낮은 편이다. 또한 평균 임차면적비율은 47%로 높은 편이다. 겸업소득은 매우 높으나 상대적으로 임금소득과 이전소득은 많지 않다.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22%로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제1유형은 쌀전업농의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제2유형에 속한 농가들은 농업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이 가장 많고 노동생산성은 가장 낮다. 농업부가가치와 농업소득 수준은 유형들 중 중간정도이다. 경지면적은 1.8ha 정도이다. 경영주 평균 연령은 54세, 교육연수는 8.5년이다. 쌀 수입 비중은 16%이고 채소수입 비중은 57%로 채소수입이 유형들 중 가장 높다. 임차면적 비율도 66%로 가장 높다. 이전소득은 가장 낮고 임금소득은 평균 455만원 정도이다. 부채 비율은 38%로 가장 높다. 이러한 특징으로 판단할 때 제2유형은 원예중소농의 특징을 갖고 있다.
- 제3유형에 속한 농가들의 평균 농업부가가치는 3,524원으로 가장 높고 농업소득도 2,510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다. 경지면적이 낮고 토지생산성은 가장 높다. 평균 경영주 연령은 54세이고 교육연수는 약 9년으로 높다. 농업총수입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2%이고 다른 작목수입의 비중은 매우 낮다. 따라서 제3유형은 축산 전업농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제4유형에 속한 농가들은 경영주 인적 자본, 영농시간, 가족구성원수, 토지생산성, 부채 비율 등은 제5유형과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업부가가치와 농업소득 측면에서는 제2유형 수준이다. 영농 형태 변수의 특징은 평균 쌀 수입 비중이 16%, 채소와 과수 수입 비중이 각각 34%, 34%로 복합영농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 임차비율은 17%로 가장 낮다. 겸업소득과 임금소득은 다른 유형에 비해 낮으나 이전소득은 298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가계비와 부채 비율도 가장 낮다. 따라서 제4유형은 복합 영농 형태를 나타내는 고령복합농의 특징을 갖고 있다.
- 제5유형에 속한 농가들은 경작면적이 작은 편이고 농업부가가치, 농업소득도 제6유형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가족구성원수, 농업자본 투입, 토

지 생산성이 가장 낮다. 경영주 평균 연령은 68세, 교육수준은 6년으로 가장 낮다. 농업총수입에서 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높으나, 과수 및 축산 수입의 비중은 낮다. 겸업소득과 임금소득은 가장 낮으나 이 전소득은 가장 높다. 가계비와 부채 비율도 가장 낮다. 따라서 제5유형은 고령영세농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제6유형에 속한 농가들의 평균 경작면적, 영농시간, 농업부가가치, 농업소득은 유형들 중 가장 낮으나 농외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임금소득은 평균 2,438만원으로 가장 높다. 자본생산성은 낮으나 노동생산성은 높은 편이다. 평균 경영주 연령은 55세로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연수는 9.5로 유형 중 가장 높고, 가족구성원수는 평균 4명이다. 가계비 지출액은 유형 중 가장 높다. 따라서 제6유형은 농촌에 거주하나 농외임금소득이 주 소득원인 부업농의 특징을 갖고 있다.

표 3-10. 유형별 일차변수의 평균값

변수	제1유형 (쌀전업농)	제2유형 (원예중소농)	제3유형 (축산전업농)	제4유형 (고령복합농)	제5유형 (고령영세농)	제6유형 (부업농)
경작면적	4.21 (4.12)	1.77 (1.70)	1.16 (1.22)	1.28 (1.03)	1.44 (1.01)	1.07 (0.83)
농업자본	16.44 (9.91)	8.52 (6.61)	12.26 (10.30)	5.12 (4.59)	2.90 (2.31)	6.32 (4.26)
영농시간	914 (848)	1331 (1321)	1264 (1007)	768 (557)	419 (265)	373 (320)
가족수	3.91 (1.47)	3.67 (1.46)	3.52 (1.46)	2.51 (0.82)	2.34 (0.74)	4.30 (1.38)
농업부가가치	34.41 (35.10)	20.47 (21.21)	35.24 (39.10)	16.32 (18.44)	10.21 (8.57)	8.70 (12.22)
농업소득	19.72 (25.22)	10.59 (16.34)	25.10 (31.18)	12.06 (15.29)	7.69 (7.01)	5.64 (10.20)
노동생산성	48,130 (105,440)	15,725 (12,001)	28,818 (29,995)	19,781 (15,261)	26,047 (18,414)	48,778 (311,781)
토지생산성	1,001,869 (,1867,647)	1,741,827 (4,441,564)	117,000,000 (814,000,000)	1,301,795 (1,442,459)	697,261 (270,336)	914,948 (2,2301,65)
자본생산성	2.17 (1.86)	2.71 (2.42)	3.15 (2.57)	3.52 (3.02)	4.60 (4.19)	1.53 (1.48)
경영주 연령	52.30 (8.74)	53.62 (9.65)	54.20 (10.14)	63.15 (8.60)	67.69 (6.73)	54.86 (9.09)
경영주 교육연수	9.35 (3.07)	8.53 (3.21)	9.31 (3.40)	7.84 (3.38)	5.93 (3.11)	9.52 (3.42)

&lt;계속&gt;

변수	제1유형 (쌀전업농)	제2유형 (원예중소농)	제3유형 (축산전업농)	제4유형 (고령복합농)	제5유형 (고령영세농)	제6유형 (부업농)
쌀수입비중	0.73 (0.56)	0.16 (0.22)	0.09 (0.12)	0.16 (0.19)	0.76 (0.28)	0.63 (0.40)
채소수입비중	0.14 (0.25)	0.57 (0.36)	0.05 (0.08)	0.34 (0.37)	0.13 (0.12)	0.15 (0.19)
과수수입비중	0.06 (0.19)	0.03 (0.14)	0.02 (0.10)	0.33 (0.53)	0.02 (0.06)	0.13 (0.31)
축산수입비중	0.04 (0.12)	0.02 (0.07)	0.82 (0.21)	0.03 (0.08)	0.05 (0.10)	0.04 (0.09)
임차면적비율	0.47 (0.32)	0.66 (0.32)	0.37 (0.36)	0.17 (0.23)	0.37 (0.33)	0.29 (0.34)
겸업소득	10.59 (15.45)	1.34 (3.99)	1.84 (5.54)	1.17 (3.41)	0.53 (1.85)	0.74 (3.63)
임금소득	3.85 (5.68)	4.55 (6.36)	4.51 (8.02)	2.50 (4.66)	2.26 (3.75)	24.38 (13.38)
이전소득	2.76 (4.72)	1.85 (2.60)	2.56 (4.54)	2.98 (4.55)	3.18 (3.93)	2.20 (3.44)
가계비	30.60 (15.90)	22.32 (12.30)	29.13 (16.48)	19.52 (14.26)	14.73 (8.73)	36.45 (35.49)
부채비율	0.22 (0.23)	0.38 (0.42)	0.17 (0.21)	0.08 (0.13)	0.05 (0.10)	0.09 (0.13)

주: ( )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 군집분석에 의한 농가 유형화 작업에서 농업소득, 경영주 연령, 영농 형태는 농가 유형을 구분 짓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 유형을 구분하는 지표로 농업소득, 경영주 연령, 영농 형태는 주요 지표로, 나머지 변수들은 보조 지표로 활용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용이하면서 실효성 있는 농가 유형 구분이 될 수 있다.



## 제 4 장

# 국내외 농가 유형 구분방식 검토

### 1. 우리나라의 농가 유형 구분 방식

-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가 유형은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농림부가 각각 다른 용어 및 기준으로 서로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다.

#### 1.1. 통계청

##### 1.1.1. 개요

- 먼저 통계청은 통계조사의 목적으로 농가를 유형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업총조사와 농업기본통계조사의 유형화 방식이 서로 상이하다. 즉 2000년 농업총조사와 2004년 농업기본통계조사는 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 다르게 농가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 1.1.2. 2000년 농업총조사의 농가 유형 분류

- 농가 :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 조사기준 현재 경지 10a(약 300평)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다만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 시점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포함.
- 전업농가 : 지난 1년간 농업 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 겸업농가 : 지난 1년간 농업 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 1종 겸업농가 : 농업수입이 농업이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
  - 2종 겸업농가 : 농업이외 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

### 1.1.3. 2004년 농업기본통계조사의 농가 유형 분류

- 주업농가 :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이 농업이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
  - 전문농가 : 주업농가 중에서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농가
  - 일반농가 : 주업농가 중에서 경지규모가 3ha 미만이고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가
- 부업농가 :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이외 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 경지가 없거나 경지규모가 30a 미만인 농가 중에서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 1.2. 보건복지부

### 1.2.1. 개요

- 보건복지부의 농가 유형 분류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파악하는 방법에 따라 이루

어진다. 즉 사회복지적 계층 분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농, 차상위계층농 등의 분류가 이루어진다.

- 보건복지부 분류상의 전문농은 통계청의 농업기본통계조사 상의 전문농가와 동일하다.<sup>3</sup>

### 1.2.2. 보건복지부의 농가 유형 분류

- 기초생활수급농 :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인정액<sup>4</sup>을 가지는 농가
  - 2005년도 최저생계비 : 401,466원(1인), 668,504원(2인), 907,929원(3인), 1,136,332원(4인)
- 차상위계층농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120%에 해당하는 계층의 농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나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계층인 농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상이지만, 소득(경상소득-생계급여-정부지원)은 120% 미만인 농가
- 전문농 :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농업수입이 농업외의 수입보다 많은 농가
- 일반영세농 : 위의 3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농가

<sup>3</sup> 이는 통계청이 2004년 조사에서 보건복지부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됨.

<sup>4</sup>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자산 월 6.26%, 승용차 월 100%)

## 1.3. 농림부

### 1.3.1. 개요

- 농림부의 농가 유형 구분은 그 기본 골격에 있어서 통계청의 2000년 농업 총조사의 구분과 유사하다.
  - 통계청의 농가 기준이 농림부의 농업인 기준과 유사하고, 농가 유형화 주요 개념으로 전업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의 전업농 개념은 명확한 지표에 의해 구분이 가능한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대상 형태로 제시되어 있고, 기본 단위가 농가가 아닌 농업인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
  - 이에 따라 농림부는 전업농을 품목별로 접근하고 있고, 품목별 특성에 맞는 전업농 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또한 육성해야 할 대상이란 측면에서 우수농업경영체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다.

### 1.3.2. 농업인 기준

- 농림부는 법제상으로 “농가”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농업경영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농업·농촌기본법 상의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된다.
  -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 제15조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3항).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농업인에 대한 정의인데, 농업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1,000m<sup>2</sup>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 농지법상의 농업인 정의는 기본적으로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정의와 같은 편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부가적인 정의가 있다.

- ① 1,000m<sup>2</sup> 이상 농지를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② 농지에 330m<sup>2</sup> 이상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1.3.3. 전업농업인 및 전업농 육성 대상자 개념

-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르면 “농림부장관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는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전업농업인이 더욱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전업농업인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정의되고(법제2조 6호), 동 법의 시행규칙에서 미작농업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 1인 이상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1. 벼를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6만m<sup>2</sup> 이상의 농지
    2. 제1호외의 농업인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농지”(시행규칙 제2조)
- 전업농 육성 대상자는 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전업농업인으로서의 정착이 가능한 영농규모를 갖고, ② 영농의욕이 강하고 과학영농기술의 개발 등으로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 이에 대한 세부선정 기준은 사업시행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 규정이 있는 것은 미작 뿐이다(2ha 이상 경작하는 55세 이하의 농업인).

표 4-1. 품목별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 대상자 기준 현황

단위 : 천 농가

2003년 기준	전업농(채소·특작은 선도농)		전업농 육성대상자	
	품목과 기준	농가수 (비중)	품목과 기준	농가수 (비중)
전 체		191		75
쌀	· 평균 3ha 수준	86 (25%)	· '03년까지 지정된 1.5ha 이상 농가 · 2ha 이상, 55세 이하	71
과수	· 1.5ha 이상, 평당소득 8천원 이상 · 과수소득이 농가소득의 70% 이상 · 농가소득은 도시평균 이상	18 (39%)	· 적정규모 이상 · 기술농업실천농가 (구체적 기준없음)	
화훼	· 화훼소득이 농가소득의 60% 이상	10 (71%)*	· 겸업농가 (구체적 기준 없음)	4
채 소 · 특 작	· 0.7ha 이상 -노지 : '00년 도시평균의 20% 이상 -시설 : 부작목 소득포함 2,784만원 이상	63 (22%)*	· 0.3ha 이상 (구체적 기준 없음)	
일반 밭작물	-	-	(구체적 기준 없음)	
축산	· 농업소득 48백만원 이상 -한우·젓소 50두, 돼지 1천두, 닭 3만수이상	14 (68%)	· 창업농 연 600명 수준 (구체적 기준없음)	
기타	-	-	(구체적 기준없음)	

\* 주: 농가 수 기준

- 요컨대 전업농업인과 전업농육성 대상자는 품목별로 접근하여 정책 추진 또는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품목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기준이 없는 품목도 있다 <표 4-1>.

## 1.4. 평가

- 우리나라의 농가 유형 분류는 아직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해 개념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책시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맞춤형 농정과 같이 현실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농가 유형 분류가 필수적인 경우에 현재의 분류체계는 정책시행의 커다란 애로 사항이 된다. 따라서 농가현실에 부합하는 통일된 농가 유형 분류체계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 현재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농림부가 각각 다른 분류체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복지적 정책을 농업 이외의 부문과 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농가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과 농림부는 통일된 농가 유형 분류체계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 통계청은 현재 농업총조사에서는 전업농/겸업농 분류를 사용하고, 농업기본통계조사에서는 주업농/부업농/자급농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이원화된 분류체계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전업농/겸업농 분류보다 주업농/부업농/자급농 분류가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분류로 판단되기 때문에 농가 유형 분류를 주업농/부업농/자급농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국 사례로 독일에서는 농가 유형 구분을 1990년대에 종전의 전업농/겸업농 분류에서 주업농/부업농 분류체계로 전환했다.
- 농림부는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통계청의 분류와 별도로 정책적 육성대상으로서의 전업농업인을 개념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 유형화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첫째, 전업농업인은 그러한 범주로 분류 내지 선정 자체가 이미 정책적 육성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유형별로 그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맞춤형 농정과 그 목적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전업농업인을 육성이 아닌 다른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관련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농

정의 대상으로서 전업농업인은 그 용도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 둘째, 전업농업인을 품목별로 접근하기 때문에 구분의 기준이 너무 많고 또한 지표로서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2. 외국의 농가 유형 구분 방식

### 2.1. EU

#### 2.1.1. 개요

- EU에서 농업경영체에 대한 유형 구분은 「1985년 6월 7일의 집행위원회 결정」, “농업경영체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유형 구분 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한 집행위원회 결정”(85/377/EEC)에 따라 실시된다.
- 이러한 유형 구분 시스템을 창출한 목적은 유럽연합 내에서 구분 기준에 상응하는 농업경영체들의 계층별 실태를 파악하고, 계층들 간 및 회원국들 간의 경영체들을 상호 비교하여 공동농업정책(CAP) 수립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다(동 결정 제2조).
- EU에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는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품목별 전문화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 여기서 이러한 두 가지 유형 구분은 모두 경영체의 표준수입(SGM, standard gross margin)을 이용해 이루어진다.

#### 2.1.2. 표준수입(SGM) 산출방식

##### 가. 품목별 표준수입 산출

- 일차로 품목별 경지단위당 혹은 가축단위당 표준수입을 계산한다. 경지는



ha당, 가축은 두당 표준수입을 계산하지만, 가금류는 100수, 양봉은 양봉 통을 기준으로 한다.

- 품목별 표준수입은 조수입에서 해당 품목과 직접연관된 비용, 즉 특정비용(Spezialkosten)을 빼고 난 뒤의 값이다.<sup>5</sup>
- 품목별 표준수입은 3개년 평균값을 사용하고, 조건불리지역과 같은 지역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지역지수를 곱해 최종 품목단위당 표준수입을 산출한다.
  - 품목별 표준수입은 2년마다 내용을 갱신한다.

#### 나. 농업경영체의 표준총수입 산출

- 개별 경영체는 품목별 표준수입 지표를 근거로 작물별 재배면적과 축종별 사육두수를 곱해 해당 경영체의 품목별 표준수입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해 경영체의 표준총수입을 산출한다.

### 2.1.3. 영농규모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 가. 영농규모 설정기준 및 지표

- EU에서 영농규모는 농업경영체의 표준총수입 크기로 정해지는데, 유형화를 위해 일정 크기의 표준총수입을 유럽규모단위(ESU, European Size Unit)로 나타내고 있다.
  - 유럽규모단위(ESU)는 표준총수입 1,200유로를 1 ESU로 보는 것이다(1 ESU = € 1,200).<sup>6</sup>

<sup>5</sup> 특정비용은 경영체의 비용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파악할 때 발생하는 개념이다. 비용은 경영체 전체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과 품목별로 발생하는 개별비용으로 구분되고, 개별비용은 다시 생산품목별로 환산될 수 있는 특정비와 품목별로 환산될 수 없는 기타 개별비용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비료비, 종자비, 사료비, 일용인건비 등은 특정비이고, 건물비와 농기구비, 상근 인건비 등은 공동비용에 속한다.

<sup>6</sup> 당초 ESU는 1980년 기준으로 그 때 유럽연합 화폐 ECU 크기로 1,000 ECU의 표준총

- ESU의 크기에 따른 구분은 원래 다음과 같은 10단계로 계층화되어 있었다.

표 4-2. ESU 크기에 따른 계층 구분

계층	ESU 크기
I	2 ESU 미만
II	2~4 ESU 미만
III	4~6 ESU 미만
IV	6~8 ESU 미만
V	8~12 ESU 미만
VI	12~16 ESU 미만
VII	16~40 ESU 미만
VIII	40~100 ESU 미만
IX	100~250 ESU 미만
X	250 ESU 이상

자료: EU 집행위원회결정 85/377/EEC, 부속서 III

#### 나. ESU 크기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 현재 EU에서 사용하는 ESU의 크기에 따른 농업경영체 유형화는 16 ESU 이상을 주업농(professional farm), 그 이하를 부업농 (non professional farm)으로 보는 한 가지 방법을 따르고 있다.
- 그런데 EU 농정에서 농업경영체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주업농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농규모 크기에 의한 계층화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나타난다 할 수 있다.
  - ① 16~40 ESU 미만
  - ② 40~100 ESU 미만
  - ③ 100~250 ESU 미만
  - ④ 250 ESU 이상

수입을 1 ESU로 해서 산출되었는데, 현재의 통화로 1,200 유로로 환산된 것이다.

#### 2.1.4. 생산품목의 전문성에 따른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 이것은 경영체의 표준총수입에서 품목별 표준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즉 품목별 표준수입의 구성에 의해 구분하는 방법이다. 즉 농업경영체의 표준총수입 중에서 특정 품목군의 표준수입이 2/3 이상 될 때, 해당 농업경영체는 그 유형의 농업경영체로 분류된다.
- 품목별 전문성에 의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은 세분화의 정도에 따라 ① 일반적 유형, ② 주된 유형, ③ 세부유형, ④ 세부유형의 상세화로 단계적으로 분화된다.
  - 세부유형의 상세화는 회원국의 임의사항으로 해당 품목이 적을 경우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
- 일반적 유형은 해당 품목류의 표준수입 2/3 이상을 기준으로 ① 경종농업, ② 원예농업, ③ 과수농업, ④ 초지축산, ⑤ 사육축산으로 구분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복합경영체로 분류된다.
  - 복합경영체는 식물류의 표준수입이 전체 표준총수입의 1/3 이상이고 동물류의 표준수입이 1/3 미만이면 복합농업경영체, 동물류의 표준수입이 전체 표준총수입의 1/3 이상이고 식물류의 표준수입이 1/3 미만이면 복합축산경영체, 나머지는 복합농축경영체로 된다.
- 표준수입의 구성에 의한 농업경영체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유형분류는 대분류(일반적 유형)에서 다음과 같이 전문농 5개, 복합농 3개로 나타난다.
  - ① 경종농업경영체
  - ② 원예농업경영체
  - ③ 과수농업경영체
  - ④ 초지축산(소, 말, 양)경영체
  - ⑤ 사육축산(돼지, 닭, 기타 가금)경영체
  - ⑥ 복합농업경영체
  - ⑦ 복합축산경영체
  - ⑧ 복합농축경영체

## 2.2. 독일

### 2.2.1. 농업경영체의 유형 구분 방식

#### 가. 개요

- 독일에서 농업경영체에 대한 유형 구분은 기본적으로 EU의 유형 구분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에 대한 EU의 집행위원회 결정(85/377/EEC)이 1985년에 제정되었지만, 이에 대한 독일에서의 적용은 2003년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2003년 이전에 독일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농업경영체에 대한 유형 구분을 해왔다.
- 이에 따라 현재 실시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유형 구분 또한 기본적인 내용은 EU 방식이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독일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 즉 농업경영체의 표준총수입의 크기에 의한 유형화와 표준수입의 내부구성에 의한 유형화가 EU의 방식을 따른 것이지만, 지표 설정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는 부분이 있다.
  - 또한 독일은 EU의 경우와는 다르게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에 의한 유형 구분을 실시하고 있다.
- 이러한 유형 구분의 목적은 EU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체들의 계층별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즉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에서 농업경영체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유형화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형별 실태에 적합한 후속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를 활용하고 있다.
  - 또한 주업농 기준은 농업경영체로서 과세상의 우대를 받는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다.

#### 나. 법적 형태에 의한 구분

- 독일에서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민법과 상법에 있는 다양한 법적 형태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이것에 따른 유형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통상 농가라고 부르는 개인경영체, 둘째는 인적회사, 셋째는 법인경영체가 된다.

- 인적회사에는 민법상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이 속하고, 법인경영체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록조합 등이 된다.

표 4-3.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에 따른 독일의 유형 분류

농업경영체의 유형	경영체의 (법적) 형태
개인경영체	농가
인적회사	민법상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법인경영체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록조합

- 최근(2003년 이후)에 독일에서는 개인경영체와 인적회사를 합쳐서 1개의 유형으로 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다.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한 구분

- 독일에서는 영농규모에 의한 유형 구분을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한 구분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ESU의 크기에 의해 주업농과 그 밖의 유형 경영체를 구분하고, 다시 주업농 내에서 ESU의 크기에 따라 계층을 구분한다.
- 독일에서 주업농(Haupterwerbsbetriebe)은 법인경영체를 제외한 개인경영체 및 인적회사 중에서 유럽규모단위(ESU)가 16 ESU 이상이고 연간노동력 단위(AWU, annual work unit)가 1 AWU 이상인 경영체가 된다.
  - 여기서 연간노동력단위(AWU)는 성인 1명의 노동력을 말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즉 1 AWU는 16~65세의 노동력이 하루 8시간, 연간 225일 노동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1,800시간 노동하는 것을 말한다.<sup>7</sup>

<sup>7</sup> 1 AWU = 1단위노동력×8시간×225일 = 1,800시간. 65세를 초과하면 단위노동력이 0.5

- EU와 달리 독일의 주업농은 ESU 규정 이외에 연간노동력단위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 영세농과 부업농은 같은 유형으로 묶어서 ESU가 8~16단위 이내이거나 AWU가 1단위 미만인 경영체하고, 8 ESU 미만의 농업경영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독일에서 표준총수입의 크기에 의한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 분류는 농업 법인과 영세농 및 부업농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주업농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 ① 16~40 ESU 미만
  - ② 40~100 ESU 미만
  - ③ 100 ESU 이상

#### 라. 표준수입의 구성에 의한 유형 구분

- 독일에서 표준수입의 구성에 의한 유형 분류는 대분류(일반적 유형)에서 EU와 거의 같다. 즉 일반적 유형은 특정 품목군의 표준수입 2/3 이상을 기준으로 ① 경종농업경영체, ② 원예농업경영체, ③ 과수농업경영체, ④ 초지축산경영체, ⑤ 사육축산경영체로 구분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복합경영체로 분류된다.<sup>8</sup>
  - 품목분류에서 EU와의 차이점으로는 관상수 재배가 EU에서는 과수농업으로 분류되는데, 독일에서는 원예농업으로 분류되는 점을 들 수 있다.

로 환산된다.

<sup>8</sup> 독일에서는 복합경영체를 일반적 유형 단계에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지 않고 동일 유형으로 보다가 그 다음 단계(주된 분류)에서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 마. 표준수입 산출 방식

- 품목별 표준수입과 경영체의 표준총수입을 산출하는 방식은 EU와 동일하다.
- 표준수입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지역을 38개로 구분하고, 23개의 작물류와 16개의 축종에 대해 표준수입을 산출한다.
  - 작물의 품목 설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개별 작물에 대해 전부 표준수입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과수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몇 개의 류로 분류하여 표준수입을 산출한다.
  - 현재 지역은 38개의 광역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차이를 보정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약 430개 시·군 단위로 지역지수를 산출했었다.
  - 품목별 표준수입은 매년 갱신하고 있다.
- 품목별 표준수입 산출과 관련하여 독일에서 품목별 표준수입과 표준화된 고정비 크기를 산출하는 기관은 농업기술및건설관리국(KTBL, Kuratorium für Technik und Bauwesen in der Landwirtschaft e.V.)인데, 여기서 매년 갱신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 KTBL은 표준수입과 관련된 지표 산출을 위해 통계조사와 농업경영체의 부기장부 기록을 활용한다.

### 2.2.2. EU와 독일의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방식 비교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 독일에서 EU의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방식을 적용하기 이전에 독일은 독자적인 유형 구분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이전의 유형 구분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독일의 이전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방식

- 사회경제적 지표로서 농업경영체를 분류하는 방식은 이전에도 독일에서는 주업농과 부업농 개념을 사용했다. 다만 지표의 내용이 달랐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업농(Haupterwerbsbetriebe) : 영농 활동에 투하하는 경영주의 노동시간이 50% 이상이고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50% 미만인 개인경영체 (농가)
- 부업농(Nebenerwerbsbetriebe) : 영농 활동에 투하하는 경영주의 노동시간이 50% 미만이거나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50% 이상인 개인경영체 (농가)
- 영농규모는 표준총수입이 아닌 표준경영체소득(Standardbetriebseinkommen, STBE) 크기로 구분했는데, 표준경영체소득(STBE)은 품목별 표준수입(Standarddeckungsbeiträge, SDB)에서 공동비에 속하는 표준화된 고정비를 추가적으로 뺀 품목별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 1,000 마르크를 단위로 해서 표준경영체소득 크기에 따라 4계층으로 구분하였다.
    - ①  $5 \leq STBE < 15$ , ②  $15 \leq STBE < 50$ , ③  $50 \leq STBE < 100$ , ④  $100 \leq STBE$
- 생산품목의 전문성에 따라 농업경영체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EU의 방식과 같은 품목별 표준수입 구성에 따르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경영체의 표준총수입에서 특정 품목군의 표준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2/3가 아니라 75%를 경계지표로 했다.
  - 또한 원예를 일반 농업에서 분리하여 유형화했다. 즉 일반 농업을 ① 경종농업, ② 과수농업, ③ 초지축산, ④ 사육축산, ⑤ 복합농업의 5가지로 구분하고, 원예를 ① 채소, ② 화훼, ③ 관상수의 3가지로 구분했다.

#### 나. 독일과 EU의 유형 구분 방식 비교

- 농업경영체의 유형 구분 방식에서 독일과 EU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표 4-4>와 같다.



표 4-4. 독일과 EU의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 방식 비교

구분	이전의 독일	현재의 독일	EU
표준수입/ 지역구분	시·군 차원 (약 430개)	EU와 동일	광역지역 차원 (38개)
표준수입/ 업데이트	매년	매년	2년마다
영농규모/ 단위지표	표준경영체소득(STBE)	EU와 동일	유럽규모단위(ESU) 1ESU=1,200€
영농규모/ 주업농	경영주 노동시간≥50% 농외소득<50%	표준총수입≥16ESU 노동시간≥1AWU	표준총수입≥16ESU
전문화/ 유형	농업과 원예 구분 농업 5개 유형 원예 3개 유형	EU와 동일	원예를 농업에 포함 5개의 전문농 3개의 복합농
전문화/ 기준	품목군의 표준수입 비중 ≥75%	EU와 동일	품목군의 표준수입 비중 ≥2/3
법적 형태	개인경영체 인적회사 법인	개인경영체와 인적회사를 같은 유형으로 통합	구분 없음

## 2.3. 일본

### 2.3.1. 농업경영체 현황 및 유형 구분방식

#### 가. 농가

- 일본에서 농업경영체는 전통적으로 가족농업경영인 농가가 주체이며 경영의 기본적인 단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가족경영을 종전에는 취업 상태에 따라 전업농, 겸업농(1종겸업, 2종겸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고령 전업농가 증가하는 등 전업농도 성격이 상반되는 농가가 나타나는 실태를 반영하여 ‘주업농가’, ‘준주업농가’, ‘부업적농가’, ‘자금적농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4-5. 일본의 농가 유형 구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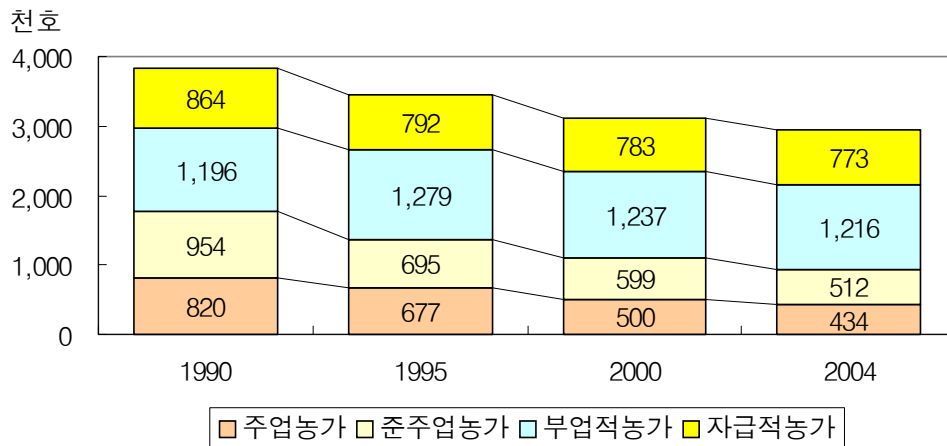
단위 : 천호, 천명

구분	2004	비고
1. 농가구분	2,934	○경지면적 10a 이상,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15만엔 이상
판매농가	2,161	○경지면적 30a 이상, 또는 판매금액 50만엔 이상
자급농가	773	○경지면적 30a 미만이면서 판매금액 50만엔 미만
2. 전겸업구분		(판매농가만 대상)
전업농가	441	○세대원중 겸업종사자가 없는 농가
제1종겸업농가	282	○겸업종사자가 1인 이상, 농업소득>농외소득
제2종겸업농가	1,439	○겸업종사자가 1인 이상, 농업소득<농외소득
3. 주부업구분		(판매농가만 대상)
주업농가	434	○농업소득이 주(농가소득의 50%이상)이고, 65세미만 농업종사일수 60일이상인 자가 있는 농가
준주업농가	512	○농외소득이 주(농가소득의 50%이상)이고, 65세미만 농업종사일수 60일이상인 자가 있는 농가
부업적농가	1,216	○65세미만 농업종사일수 60일이상인 자가 없는 농가
4. 농업노동력구분		(판매농가만 대상)
농업종사자	6,230	○15세 이상 세대원, 연간 1일 이상 자영농업에 종사한 자
농업취업인구	3,620	○자영농업만 종사한 자 또는 자영농업 이외에 종사해도 연간 노동일수가 자영농업이 많은 자
기간적 농업종사자	2,200	○농업취업인구 중, 주된 상대가 농업인 자
농업전종사자	1,670	○농업종사자 중, 자영농업에 150일 이상 종사한 자

자료 : 농림수산성

- 일본에서 농가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표 4-5>에 요약되어 있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주업농과 부업농의 구분에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65세 미만의 농업노동력이 있는가가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4-1. 일본의 농가 유형별 호수 추이



자료 : 농림수산성

## 나. 농업법인

- 농업법인이 전체 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최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당초 농지법에서는 투기방지 등을 목적으로 경작자 주체의 법인(농업생산법인)에 한정하여 농지 취득을 인정하였으나 2001년부터 주식회사(주식양도 제한) 형태의 농업생산법인도 농지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표 4-6. 일본의 농업생산법인 등록 현황

구분	1990	1995	2000	2003
농사조합법인	1,626	1,335	1,496	1,636
유한회사	2,167	2,797	4,366	5,233
합자회사	16	14	22	26
합명회사	7	4	5	6
주식회사	-	-	-	52
계	3,816	4,150	5,889	6,953

자료 : 농림수산성

## 다. 마을영농

- 일본에서는 부락단위로 농지를 집단화 하여,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마을영농이 특수한 경영 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농기계 과잉투자나 후계자 부족 등 지역농업이 안고 있는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는데 수단으로 마련되었다.
  - 일반적으로 마을영농은 1개 부락 또는 수개 부락을 단위로 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 기계·시설의 공동 이용, 오퍼레이터의 조직화, 능력이나 사정(겸업농가, 고령자, 여성 등)에 따른 농작업 분담, 고수익작물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마을영농은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력을 살려서 채소 등의 생산에서 가공 활동도 이르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위 ‘커뮤니티 비즈니스’로서 가능성도 높다. 특히 노동의 기회비용이 낮아서 생산 코스트가 낮다는 점과 지역농업의 다수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원관리라는 면에서도 그 지속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 또한 생산에서 판매 및 수익배분에 이르기까지 ‘일원적인 경리’를 실시하는 마을영농의 법인화도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마을영농이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마을영농의 수는 2000년 9,961개에서 2005년 10,063개로 약간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쌀, 과수, 채소를 주로 취급하는 마을영농은 감소하는 대신, 잡곡·서류·두류, 맥류 등은 증가하고 있다.
  - 2005년 5월 현재, 농기계 공동소유가 46.0%를 차지하고 있다. 즉 농기계를 공동 소유하면서, 참가 농가가 공동 이용하거나 오퍼레이터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마을영농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락내 영농을 일괄 관리·운영하는 ‘부락농장형’ 조직도 14.7%를 차지하고 있다.

표 4-7. 일본의 품목별 마을영농수

구 분	2000	2005
쌀	7,002	6,089
맥류	1,238	1,752
잡곡·서류·두류	889	1,505
공예작물	96	56
채소류	81	62
과수류	233	169
화훼·화목	13	7
사료용작물	284	243
기타	125	180
합계	9,961	10,063

자료 : 농림수산성

### 2.3.2. 인정농업자 제도

#### 가. 개요

- 일본에는 일반 농업인과 구별되는 특수한 농업경영체 유형으로 인정농업자를 선정하여 육성하는 제도가 있다.

표 4-8. 일본의 인정농업자수 (2006년 3월 말 현재)

구분	인정자수
인정농업자	200,842
법인	8,840
특정농업법인	345
특정농업단체	213

- 주 : (1) 인정농업자란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12조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2) 특정 농업법인과 특정 농업단체는 동법 23조 4항에서 각각 규정하는 자  
 (3) 상기 법인과 특정 농업법인은 중복이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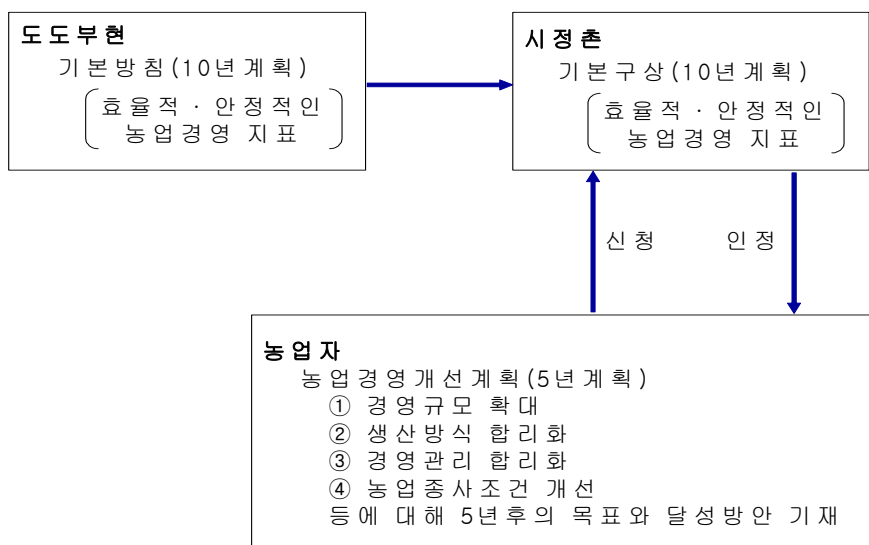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성

- 인정농업자는 의욕과 능력을 가지고, 농업경영의 전문가를 지향하는 자로서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그 계획을 시정촌이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 인정농업자의 수는 2006년 3월 말 현재 20,084명으로 이 중에서 법인 수가 8,840개에 달한다.

### 나. 인정 절차

- 인정 절차를 보면, 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이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기본구상’을 수립하며, ②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가 5년 정도의 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정촌에 신청하고, ③ 이에 대해 시정촌이 기본 구상에 따라 심사하고 인정한다.
  - 인정농업자는 성별, 전·겸업별 제한은 없으며, 단지 경영규모의 크기, 영농유형, 법인화 등에 대해서는 시정촌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설정된다.

그림 4-2. 인정농업자의 인정체계



- 시정촌이 농업경영 개선계획을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경영 개선계획이 시정촌의 기본 구상에 근거하여 적절할 것
  - 경영 개선계획이 농지의 효율적·종합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할 것
  - 경영 개선계획이 달성될 가능성이 있을 것

#### 다. 지원 내용

- 일단 인정농업자로 인정이 되면, 금융을 비롯하여 세제, 연금 등의 지원 조치가 있으며, 또 2007년부터 실시되는 ‘품목횡단적 경영 안정대책’의 지불대상이 된다.
  - 구체적으로는 토지이용형 농업에서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구묘화 관련의 각종 자금이나 우대 조치를 비롯하여, 농기계 할증상각 등에 관련된 세제상의 특혜, 농지나 농기계 등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장기 저리자금(슈퍼L자금), 농업생산기반 및 농기계 정비, 직접지불과 같은 경영 안정대책, 농업자연금 보험료보조, 각종 경영상담 및 연수 기회 제공 등이 있다.

## 제 5 장

### 농가 유형 구분의 지표 설정과 유형화

- 농가 유형 구분은 크게 비교적 단일한 지표를 사용하는 영농규모에 의한 구분과 연령, 소득, 생산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유형별 특성에 의한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 여기서는 이러한 유형 구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인 경우에 제시된 새로운 지표에 의한 농가 유형 구분을 시도한다.

#### 1. 영농규모에 의한 농가 유형 구분

- 영농규모에 의한 구분은 그 척도에 따라 경지규모와 같은 투입요소의 크기에 의한 구분과 농업소득과 같은 산출성과의 크기에 의한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 이 연구는 투입요소에 대한 지표로 기존의 경지규모보다는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환산영농규모지표”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산출성과에 대한 지표로는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 1.1. 환산영농규모지표

### 1.1.1. 개념 및 도입의 필요성

#### 가. 개념

- “환산영농규모(Transformed Size of Farming: TSF)”는 경지 이외의 농업고정자본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얻은 값을 경지면적과 합쳐 농가의 영농규모로 파악하는 것이다.<sup>9</sup> 이러한 환산영농규모의 구체적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1) TSF=Lc+FA/Lp$$

TSF: 환산영농규모

Lc: 경지면적

FA: 농업고정자산평가액(토지제외)

Lp: 농업용 전국 평균지가 (2004년 중급의 논과 밭의 평균지가인 평당 42,000을 기준)

- 농업고정자산은 연도 초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건물 평가액 중 농업부분만을 농업고정자산 평가액에 포함시켜, 농업고정자산평가액에는 농업적 이용의 건물 평가액, 대동식물과 대농기구의 평가액이 포함된다.

<sup>9</sup> 환산영농규모는 새로이 개발된 개념이 아니라 최양부 등(1983)의 “표준영농규모”(standardized size of farming) 개념을 차용해 새롭게 명명한 것이다. 최양부 등(1983)은 표준 영농규모를 이용하여 당시의 농업경영계층을 5단계로 구분하였다.

## 나. 도입의 필요성

- 농업의 상업화, 다변화, 그리고 자본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농업경영규모를 파악하고 그것에 의한 농가 간의 생산 활동과 자원 이용 및 생산효율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토지경작규모를 보완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 농가는 복합영농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별 품목별 토지경작규모 또는 농업고정자산으로 영농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복합영농 농가의 경영규모의 종합적 파악을 위해서는 경지면적은 물론 축산, 과수 등의 경영규모,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대농기구, 농업건물 등을 하나로 종합하는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
- 평가 기준의 통일성을 위해 화폐를 평가단위로 할 경우, 토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지가상승이 농가의 경영규모를 과대평가할 수 있고 지가의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 같은 면적의 토지라도 화폐로 표현된 경영규모에는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경영규모 파악에 익숙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화폐를 평가단위로 하는 데는 많은 난점이 있다.
- 토지면적 평가단위는 경작규모의 사실적 평가가 가능하며, 토지를 제외한 축산, 과수 또는 대농기구를 토지면적으로 환산시켜 경작면적과 합쳤을 때, 경지면적으로 표현된 종합적인 농업경영규모의 파악이 가능하다.
  - 축산, 과수, 대농기구, 농업건물 등은 농업고정자산의 관점에서 화폐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전국 평균적인 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면적으로 환산시킬 경우 인플레이션 등에 의한 과대평가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

### 1.1.2. 환산영농규모지표 적용 결과

- 「2004년 농가경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환산영농규모에 따라 농가를 구분해 보면, 토지경작규모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 비하여 분석 대상 3,056호 농가의 계층이 전체적으로 상향 이동됨을 확인할 수 있다<표 5-1>. 이는 영농규모에 작용하는 경지외적 요인이 그만큼 큰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토지경작규모 기준에서 0.5ha 미만 농가는 전체 분석 농가의 26.3%를 차지하고 있으나, 환산영농규모 기준으로 볼 때 0.5ha 미만 농가 수는 10.5%에 불과하다
- 반면에 토지경작규모 기준에서 3~5ha 계층의 농가는 전체 분석 농가의 5.6%에 불과하나, 환산영농규모 기준으로 볼 때 3~5ha 계층의 농가 수는 11.4%를 차지한다.

표 5-1. 토지경작규모와 환산영농규모에 의한 영농계층 구분 비교

단위: 호, %

농업경영계층	토지경작규모 적용시 농가호수	환산영농규모 적용시 농가호수
0.5ha미만	804 (26.3)	321 (10.5)
0.5~1ha	768 (25.1)	606 (19.9)
1~2ha	894 (29.3)	1,112 (36.4)
2~3ha	318 (10.4)	490 (16.0)
3~5ha	171 (5.6)	349 (11.4)
5ha 이상	101 (3.3)	178 (5.8)
계	3,056 (100.0)	3,056 (100.0)

자료: 2004년 농가경제조사

- 환산영농규모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농업경영계층내의 동질성이 개선되고 계층 간의 이질성이 완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농업조수입과 농업경영비 상의 계층 간 변이계수<sup>10</sup>를 비교할 때, 환산영농규모를 기준으로 한 영농규모가 1ha 미만에서 변이계수가 더 작게 나타나 이 농업경영계층내의 동질성과 계층 간 이질성에 대한 분류상의 개선이 나타난다. <표 5-3>.

<sup>10</sup>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즉, 표준편차/평균 X 100)은 변이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로 정의되며 각 관측치가 평균 주위에 얼마나 집중 또는 분산되어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변이계수가 클수록 계층내 농가들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임을 나타낸다.

표 5-2. 환산영농규모에 의한 계층 간 농업조수입 및 경영비

단위: 천원

농업경영계층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환산영농규모	토지경작규모	환산영농규모	토지경작규모
0.5ha 미만	12,558	19,243	7,593	12,192
0.5~1.0ha	14,975	25,229	8,024	15,016
1.0~1.5ha	19,349	26,224	10,364	14,141
1.5~2.0ha	26,394	34,518	14,582	17,217
2.0~2.5ha	39,940	43,017	22,994	22,293
2.5~3.0ha	38,930	42,709	20,455	23,138
3.0~5.0ha	52,936	44,656	30,207	24,390
5.0ha 이상	68,078	56,161	37,869	25,002
평균	28,802	28,802	15,999	15,999

자료: 2004년 농가경제조사

표 5-3. 영농계층간 농업조수입 및 경영비의 변이계수 비교

농업경영계층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환산영농규모	토지경작규모	환산영농규모	토지경작규모
0.5ha 미만	158	188	180	213
0.5~1.0ha	145	215	160	279
1.0~1.5ha	118*	111	151*	135
1.5~2.0ha	124*	107	157*	139
2.0~2.5ha	174*	101	252*	133
2.5~3.0ha	98	110	121	129
3.0~5.0ha	111*	96	138*	113
5.0ha 이상	110	116	113*	104
평균	152	152	189	189

주: \*는 환산영농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변이계수가 높아진 경우  
 자료: 2004년 농가경제조사

### 1.1.3. 평가

- 환산영농규모지표는 품목 구분 없이 농가별 종합적인 영농규모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존의 경지규모에 의한 분류보다 더 현실에 부합하는 분류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축산을 포함하는 복합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 또한 투입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유형분류가 가지는 일반적인 장점으로서 유형분류가 비교적 용이하고 정책의 필요에 따라 유형을 쉽게 재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예를 들어 <표 5-1>과 같은 환산영농규모지표에 의한 6단계 유형 분류는 농가들의 계층별 분포를 정규분포에 가깝게 나타내고 있는 유형화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이 지표를 적용하는데 애로점으로는 농업고정자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고정자산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1.2.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 1.2.1. 개요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지표는 농가들의 영농 성과를 표준소득 형태로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농가를 유형화하는 것이다. 표준소득은 농가 조사나 농가등록 등의 방법으로 농가들의 실제 농업소득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고 또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배작목과 재배면적, 축종과 사육두수 등을 조사하여 간접적으로 농업소득을 파악하는 것이다.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에 의한 농가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절차가 차례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① 단위당 품목별 표준소득을 산출한다.
  - ② 품목별 표준소득을 근거로 개별 경영체의 표준소득을 산출한다.

- ③ 일정 크기의 경영체 표준소득을 영농규모의 단위로 나타내고, 영농 규모단위의 크기에 따라 농가를 계층적으로 구분한다.

## 1.2.2. 품목별 표준소득 산출

- 품목별 표준소득은 현재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계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소득조사 방식을 개량하고 종합화함으로써 품목별 지표를 산출하도록 한다.
  - 기존의 품목별 소득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특히 농업경영체의 표준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EU와 독일 등의 품목별 표준수입(SGM) 산출방식을 참고한다.

### 가. 기존의 농산물소득조사 방식 검토

- 현재 농산물 품목별 단위당 조수입, 경영비, 소득 등은 통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통계청에서는 7개 주요작목(논벼, 고추, 참깨, 겉보리, 쌀보리, 마늘, 양파)에 대해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소득 등을 조사한다.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6개 축종(번식우, 비육우, 젖소, 비육돈, 산란계, 육계)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축산물의 생산비와 소득 등을 산출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통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지 않는 110여 작목에 대해 총 5,300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소득을 조사하고 있다.
- 현행 농산물소득조사방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하나는 농산물소득자료를 산출하는 기관이 3곳으로 분리되어있어 기관마다 표본선정기준이 다르고, 통일된 기준하에 경영비 및 소득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가장 많은 품목을 다루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유의성 있는 결과를 산출할 만한 표본 확보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소득조사가 가지는 한계점은 품목별로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이를 표준소득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 농촌진흥청 발간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는 표준소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sup>11</sup>
  -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의 전국표본은 많게는 147농가(가을배추), 적게는 24농가(시설감귤)로 되어 있다. 품목별 표준소득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표본의 확대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인력과 재원의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
  - 소득조사가 농가의 기장자료에 의하지 않고 조사표 기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낮게 되는 점 또한 한계점이 된다.

## 나. 추진방안

- 농산물소득조사의 목적이 품목별 생산비와 소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농업경영체의 표준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품목별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경우에는 기존의 농산물소득조사 방식에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 먼저 품목별 표준소득 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원화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리체계를 통합·개편하고 인력과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품목별 표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표본농가를 확보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조사품목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표본농가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사한 품목들을 하나의 품목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토록 한다. 반면에 축산물의 품목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 여기서 EU와 독일의 사례가 참고가 되는데, 독일에서는 품목별 표준 수입(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23작목(류)과 16축종으로 되어있다.<sup>12</sup>

<sup>11</sup> 이는 통계법에 의한 조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sup>12</sup> 독일에서 유사한 품목들을 하나의 품목류로 통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

- 품목별 표준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편차를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지수는 장기적으로는 조건불리지역과 같은 지역 및 지대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시·도)별로 지수를 산출하도록 한다.
- 품목별 표준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고정비를 감산하지 않고 해당 품목의 생산에만 투하된 특정비만 감산하는 EU의 표준수입(SGM) 형태가 아니라, 고정비까지 감산하는 품목별 표준소득 형태를 따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이는 기존의 우리나라 농산물소득조사가 품목별 표준소득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되어 왔고, 또한 농업경영체의 표준소득 산출에 있어서도 EU의 경영체 표준총수입보다 독일의 이전 산출방식인 표준경영체소득(STBE)이 표준소득 개념에 보다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개별 농가의 표준소득 산출에 근거가 되는 품목별 표준소득은 관리 기관에서 매년 업데이트 하도록 한다.

### 1.2.3.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산출 및 영농규모단위 설정

#### 가.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산출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농가별 재배작목과 재배면적, 그리고 축종과 사육두수를 조사한다.
- 이 조사는 농가등록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농가등록 관리 기관이 농가별 경영체표준소득을 파악하도록 한다.

#### 나. 영농규모단위 설정

-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의 크기에 따라 농가들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크기의 표준소득을 영농규모단위(Farm Size Unit, FSU)로 환산하는 작업이

---

밀연구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 영농규모단위(FSU)는 기준 연도의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일정크기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을 기준 연도로 해서 농업경영체 표준소득 100만원을 1 FSU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1 FSU = 표준소득 100만원 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활용하게 된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영농규모 단위의 실제가치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등식의 내용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즉 2010년에 1 FSU = 표준소득 120만원으로 재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영농규모단위가 정해지면 농가에 대한 유형 구분은 FSU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다.
  - 즉 영세농(10 FSU 미만), 중소농(10~30 FSU), 전업농(30 FSU 이상)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2. 유형별 종합적 특성에 의한 농가 유형 구분

### 2.1. 군집분석에 의한 농가 유형 구분

- 제3장에서 이루어진 군집분석에 의한 농가 유형은 다음과 같은 6가지 형태였다.
  - ① 제1유형: 쌀전업농
  - ② 제2유형: 원예중소농
  - ③ 제3유형: 축산전업농
  - ④ 제4유형: 고령복합농
  - ⑤ 제5유형: 고령영세농
  - ⑥ 제6유형: 부업농
- 이러한 6가지 유형을 농업소득, 연령, 품목의 3가지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도식화 해 보면, <그림 5-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t;그림 5-1&gt; 군집분석에 의한 농가유형 분류



-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① 축산전업농, ② 쌀전업농, ③ 고령복합농, ④ 원예중소농, ⑤ 고령영세농, ⑥ 부업농 순으로 평균값이 커지지만, 원예중소농과 고령복합농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 할 수 있다.
-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0세가 고령농을 구분하는 경계치에 해당한다.
- 품목별 전문성을 가지는 농가는 축산 전업농, 쌀전업농, 원예중소농, 고령복합농으로 나타난다.
  - 부업농은 농업정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고령영세농은 사회복지적 정책 대상이 되는 농가라 할 수 있다.

## 2.2. 농가 유형 구분의 맞춤형 농정 활용방안

- 맞춤형 농정의 기본원리는 농가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메뉴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농가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상응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군집분석에 따라 공통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6가지 유형에 대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책메뉴를 제시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먼저 품목별 전문성을 보여 주는 쌀전업농, 원예중소농, 축산 전업농과

고령복합농에 대해서는 직불제 등 일반적인 농업정책을 적용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품목별 특성에 맞는 개별 지원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고령복합농과 고령영세농에 대해서는 고령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영이양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메뉴를 제시한다. 특히 고령영세농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농으로서 사회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은퇴할 수 있는 은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부업농은 원칙적으로 직불제 등 농업생산 및 소득정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그러나 농촌인구를 유지하는 농촌정책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메뉴를 제공한다.

## 제 6 장

###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농가들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4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농가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분석하고, 전체 농가를 몇 개의 유형으로 군집화하였다. 그 다음 농가 유형 구분을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 요인들이 각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농가 유형을 구분하는 분석 방법으로 인자분석(factor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군집분석에 의한 농가 유형화 작업에서 농업소득, 경영주 연령, 영농 형태가 농가 유형을 구분 짓는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농가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① 쌀전업농, ② 원예중소농, ③ 축산 전업농, ④ 고령복합농, ⑤ 고령영세농, ⑥ 부업농 등이다.

다음으로 농가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 국내외 제도 및 방식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농가 유형 분류는 아직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해 개념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책시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농가 유형 구분방식으로 EU와 독일, 일본의 제도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독일은 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분류방식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유형방식이 거의 비슷한 편이다. 일본의 농가 유형 구분에서 독특

한 것은 인정농업자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욕과 능력을 가지고 전문적인 농업경영을 지향하는 자가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그 계획을 심사하여 인정농업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 농업경영체와 구분되는 인정농업자 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EU에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는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품목별 전문화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구분에서 일종의 표준소득에 해당하는 품목별 표준수입(SGM, standard gross margin)과 경영체의 표준총수입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즉 먼저 농산물의 품목별 표준수입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경영체의 표준총수입을 산출한다. 영농규모에 따른 유형 구분은 경영체 표준총수입의 크기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영농규모를 나타내는 단위로 유럽규모단위(ESU, european size unit)가 설정되는데, 1 ESU는 1,200 유로의 표준총수입을 나타낸다. 생산품목의 전문성에 의한 유형화는 경영체의 표준총수입 중에서 특정 품목군의 표준수입이 차지하는 비중(2/3)으로 정해진다.

이 연구는 농가 유형 구분의 방법으로 3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영농규모에 의한 구분으로 각각 투입요소의 크기에 의한 구분과 산출성과의 크기에 의한 구분으로 세분된다.

투입요소에 대한 지표로 기존의 경지규모 대신에 “환산영농규모지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지표는 경지 이외의 농업고정자본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얻은 값을 경지면적과 합쳐 농가의 영농규모로 파악하는 것이다. 환산영농규모지표는 품목 구분 없이 농가별 종합적인 영농규모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존의 경지규모에 의한 분류보다 더 현실에 부합하는 분류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축산을 포함하는 복합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산출성과에 대한 지표로는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지표는 농가들의 영농 성과를 표준소득 형태로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농가를 유형화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EU 및 독일의 표준

소득 산출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체 표준소득에 의한 농가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절차가 차례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단위당 품목별 표준소득을 산출한다. 둘째, 품목별 표준소득을 근거로 개별 경영체의 표준소득을 산출한다. 셋째, 일정 크기의 경영체 표준소득을 영농규모의 단위로 나타내고, 영농규모단위의 크기에 따라 농가를 계층적으로 구분한다.

세 번째 방안은 농업소득과 연령, 생산품목 등 농가들의 종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가를 유형화하는 것으로 군집분석으로 도출된 6가지 농가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맞춤형 농정의 추진과 관련하여 농가의 유형화는 영농규모에 의한 유형화와 농가들의 종합적 특성에 의한 유형화의 두 단계로 실시되도록 한다. 이는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화를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 등에서도 영농규모에 의한 유형 구분과 전문화에 의한 유형 구분을 시행하고 있다.

영농규모에 의한 유형화는 투입요소에 의한 유형 구분보다 산출성과에 의한 유형 구분이 좀 더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표준소득에 의한 유형 구분을 영농규모의 구분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만 표준소득에 의한 유형 구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되고 구비되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환산영농규모에 의한 유형화를 실시하도록 한다.

농가들의 종합적 특성에 근거한 군집분석 유형화는 맞춤형 농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개량하고 구체화한다. 맞춤형 농정의 기본원리가 농가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메뉴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농가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상응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유형별로 개별 정책메뉴를 제시한다. 먼저 품목별 전문성을 보여 주는 쌀전업농, 원예중소농, 축산전업농과 고령복합농에 대해서는 직불제 등 일반적인 농업정책을 적용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품목별 특성에 맞는 개별 지원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령복합농과

고령영세농에 대해서는 고령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영이양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메뉴를 제시한다. 특히 고령영세농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농으로서 사회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은퇴할 수 있는 은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부업농은 원칙적으로 직불제 등 농업생산 및 소득정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그러나 농촌인구를 유지하는 농촌정책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메뉴를 제공한다.

## 참 고 문 헌

---

- 김정호. 2003. “농업정책의 방향과 주요과제” 『농정연구』 통권5호.
- 김정호, 이병훈. 2005. 『농업총조사 통계에 의한 지역농업 역량 분석』. P7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 각 연도. 『농림업 주요통계』.
- 오내원 등. 2006.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상학. 1995. “마을 단위 농촌지역의 유형 구분.” 『농업경제연구』 제36권 4호.
- 이정환. 1987. “한국 농촌지역의 유형 구분.” 『농촌경제』 제10권 4호.
- 정홍우 등. 1989. “Cluster 분석법에 의한 영농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농업경제연구』 제30권 4호.
- 최양부 등. 1983.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1995, 2000. 『농업총조사』.
- \_\_\_\_\_. 2004. 『농가경제통계』.
- Bernhardt, K.J., J.C. Allen and G.A. Helmers. 1996. “Using cluster analysis to classify farms for conventional/alternative systems research”,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18(4):599-611.
- EU. 2003. Entscheidung der Kommission vom 7. Juni 1985 zur Errichtung eines gemeinschaftlichen Klassifizierungssystems der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 (85/377/EWG).
- Everitt, B.S., Savine Landau and Morven Leese. 2001. *Cluster Analysis*, 4th edition. London: Arnold.
- Hair, J.F., R. Anderson, R. Tatham, *Multivariate Data Analysis*,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Y.
- Hardiman, R.T., R. Lacey and Y.M. Yi. 1996. “Use of cluster analysis for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farming systems in Qingyang Country, Central North China”, *Agricultural Systems* 33:115-125.
- Mikosch, Lorenz. 2003. “Der Agrarbetrieb”, Seminararbeit, Tübingen.



**W29**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6. 6.

발 행 2006. 6.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 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02-3299-4000 e-mail: [dongyp@chol.com](mailto:dongyp@chol.com)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